

21. 찬성공파(贊成公派)

태로 台老, 6세,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족보에 고려(高麗) 충목왕(忠穆王朝) 때 문과(文科)에 급제했으며 사간원좌정언(司諫院左正言),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 판도판서(版圖判書),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역임했다고 기록되어있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玄覃胤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고려의종, 명종 대	德裕덕유 大司空 檜原君 대사공 회원군 고려명종 대	昇승 吏部典書 이부전서	1 璟경 閣門祇侯 각문지후	簡간 府使 부사	台老태로 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 평장사	1 元義원의 禮曹典書 예조전서	孝生효생 軍器少尹 군기소윤	碩圭석규 刑曹判書左贊成 형조판서좌찬성 세종23년1441 년생	俊준 司諫 사간	1 思肅사숙	1 瑾근	1 守諫수간	1洙수	1 完碩완석 2 泰時태시
						2 守儉수검								
						2 思傑사걸	1 琢탁			1 夢吉몽길	1 然휴	1 培根배근		
						2 夢祥몽상	1 喜先희선			1 洪奎홍규				
						3 思弼사필	8 璞박			3 基기	1 夢相몽상	1 允馨윤형		
						4 思佑사우	1 仁居인거			1 俊良준량	1 命環명환	1 永祿영록		
			2 義居의거	1 元鎮원진	1 希雲희운	1 仲逸중일								
						2 惟義유의 平章事 평장사	平章事公派평장사공파							
			2 璋장 樞密院事 추밀원사	1 文嬭문혁 都元帥 도원수 원종11 (1270)	佑우 典客令 전객령	典客令公派전객령공파								
				2 象嬭(상혁) 判三司事 (판삼사사)	觀(적) 中書舍人 (중서사인)	舍人公派사인공파								

석규 錫圭, 9세, 찬성공파 중시조, 평장사공 태로의 증손자, 형조판서, 우참찬

1430년(세종 12년)에 태어나시고 1480년(성종 11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호군 현효생(玄孝生)이며, 어머니는 이비(李芾)의 딸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손서(孫壻;손녀사위)이다. 조선 전기에 도승지, 형조판서,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자 덕장(德璋), 호 청단(淸澗), 시호는 정경(貞景)이다. 1478년(성종 9년) 평안도관찰사로 나아가 선정을 베풀었고,

1480년 건주위(建州衛) 정벌에 공을 세워 우참찬(右參贊)에 올랐다.

1453년(단종 1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집경전직(集慶殿直)에 제수된 뒤 수차례 자리를 옮겨 내섬시직장을 역임하였다. 1460년(세조 6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감찰에 이어 개성부도사·성균관직장·형조도관정랑(刑曹都官正郎)·예조정랑·중추부경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사인으로서 춘추관편수관이 되어 『세조실록』의 편수에 참여하였다. 1472년 집의로서 언사(言事)를 활발히 전개하고, 경연에도 참여하였다. 1474년 동부승지에 발탁되고, 이듬해 우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쳐 도승지에 올랐다. 1477년 승지들 간의 불화로 좌승지 임사홍(任士洪), 우승지 한한(韓儻), 좌부승지 송순효(孫舜孝)가 문책되면서 체직(遞職: 벼슬을 갈아냄)되었으나, 성종의 신임으로 유임되었다. 이어 대사헌으로 승진했으나, 대간들이 그 부당함을 논하였다. 그러자 3일 후에는 형조판서로 승진되었고 다시금 대간들의 소가 쏟아지면서 결국 지중추부사로 체직되었다.

1478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그 해 평안도 관찰사로 나아가 선정을 베풀자 백성들이 유임을 청해 1년간 더 재직하였다. 이듬해 윤필상(尹弼商)을 도원수로 한 여진 정벌에 부원수로 차출된 김교(金嶠)를 대신해 병마절도사의 직임까지 수행하였다. 1480년 유진장(留鎭將)으로서 건주위(建州衛) 정벌에 공을 세워 우참찬이 되었다.

성품이 정직·청렴해 매사에 공의를 주장했고, 명석한 판단으로 공사(公事)를 처리하는 등 성종 초의 정치에 공헌하였다.

[문과] 세조(世祖) 6년(1460) 경진(庚辰) 별시(別試) 을과1등(乙科一等) 2[榜眼]위(02/2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三(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 이명(異名) **현석규(玄碩圭)【補】(주2)**
 • 자(字) 덕장(德璋)
 • 생년 경술(庚戌) 1430년 (세종 12)
 • 졸년 경자(庚子)(주1)【補】 1480년 (성종 11)
 • 향년 51세
 • 합격연령 31세
 • 본인본관 창원(昌原)
 •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 선발인원 20명 [乙一等3・乙二等7・乙三等10]
 • 전력 **승훈랑(承訓郎)**
 • 관직 **참찬(參贊)**

[부(父)]

• 성명 : **현효생(玄孝生)**

[조부(祖父)]

• 성명 : **현극소(玄克昭)**

[증조부(曾祖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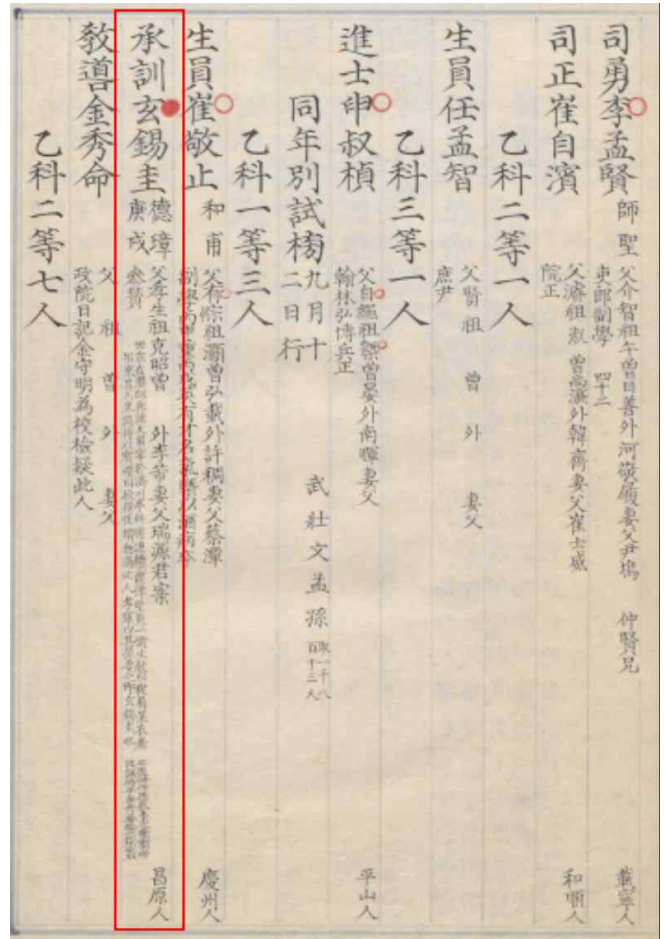
• 성명 : **현○○(玄○○)**

[외조부(外祖父)]

• 성명 : **이불(李芾)**
 •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 성명 : **이신(李審)**
 • 봉호 : **서원군(瑞源君)**
 • 본관 : **전주(全州)【補】**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 세조 7년 신사 > 4월 11일 >

세조 7년 신사(1461) 4월 11일(신사)

07-04-11[05] 사헌부에서 심인의 사건을 감찰 **현석규**로 하여금 추핵토록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의 산음 현감(山陰縣監) 심인(沈潐)이 소송을 당한 사건(事件)에 대해서, 청컨대 감찰(監察) **현석규(玄碩圭)**를 보내어 추핵(推劾)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현석규가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만일 강직(剛直)하고 현명(賢明)하여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면 **분대(分臺)**²¹⁵도 겸임(兼任)해서 보내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현석규는 분대(分臺)의 임무를 감당할 만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속히 사목(事目)을 만들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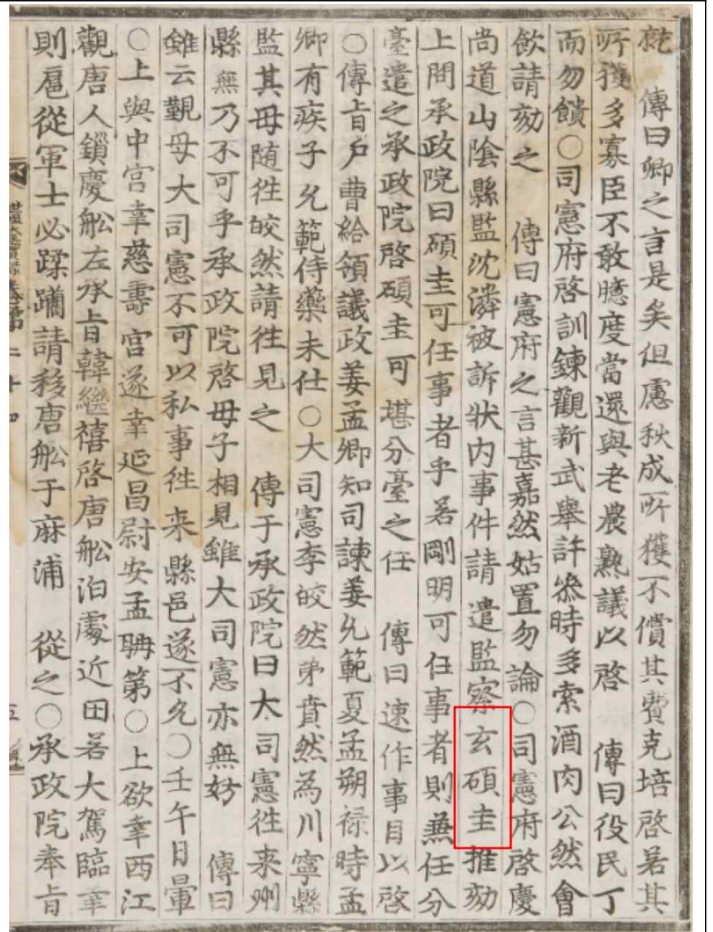
- 【대백산사고본】 9책 24권 5장 A면 【국편영인본】 7책 45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註 215]

분대(分臺) : 행대(行臺).

○司憲府啓: "慶尙道 山陰縣監沈潯被訴狀內事件, 請遣監察玄碩圭推劾." 上問承政院曰: "碩圭可任事者乎? 若剛明可任事者, 則兼任分臺遣之." 承政院啓: "碩圭可堪分臺之任." 傳曰: "速作事目以啓."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 부록 > 최종정보 세조실록 부록 / 세조실록 편수관 명단

성화 5년 기축 4월에 춘추관(春秋館)에서 명(命)을 받아 찬술(撰述)하기 시작하여, 성화 7년 신묘 12월에 끝났습니다.

찬수관(纂修官) 【전후(前後)의 관직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영관사(領館事)

수충 협책 정란 동덕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순성 명랑 경제 홍화 좌리 공신(翰忠協策靖亂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대광 보국 승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예문관홍문관관상감사 예조판서(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禮曹判書) 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臣) 신숙주(申叔舟)

수충 위사 협책 정란 동덕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순성 명랑 경제 홍화 좌리 공신(翰忠衛社協策靖亂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대광 보국 승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겸 영경연사 병조

○成化五年己丑四月, 春秋館受命始撰, 成化七年辛卯十二月畢。纂修官 【前後官并錄】

領館事:

翰忠協策靖亂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禮曹判書高靈府院君 臣申叔舟

翰忠衛社協策靖亂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上黨府院君兼領經筵事兵曹判書 臣韓明澹

監館事:

翰忠衛社協策靖亂佐翼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寧城府院君 臣崔恒

知館事:

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判敦寧府事兼知經筵事晉山君 臣姜希孟

純誠明亮佐理功臣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南原君 臣梁誠之

同知館事:

純誠佐理功臣資憲大夫禮曹判書兼同知經筵事藝文館提學陽城君 臣李承召

純誠佐理功臣嘉靖大夫同知中樞府事東萊君 臣鄭蘭宗

純誠佐理功臣嘉靖大夫工曹參判福昌君 臣金壽寧

純誠佐理功臣嘉善大夫刑曹參判廣原君 臣李克墩

嘉善大夫行義興衛護軍兼同知成均館事 臣芮承錫

修撰官:

通政大夫藝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 臣金之慶

推忠定難翊戴功臣折衝將軍行忠武衛司直兼五衛將 臣趙益貞

通政大夫藝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 臣柳暉

編修官:

通訓大夫藝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參校 臣金紐

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兼承文院參校 臣尹孝孫

通訓大夫掌樂院正 臣高台鼎

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兼承文院參校 臣孫舜孝

通訓大夫行藝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弘文館典翰承文院參校 臣任士洪

通訓大夫行司諫院司諫 臣金永堅

通訓大夫行藝文館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戡) [校勘] 臣金

판서(兼領經筵事兵曹判書) 신(臣) 한명회(韓明澮) 감관사(監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란 좌익 순성 명랑 경제 홍화 좌리 공신(輸忠衛社協贊靖亂佐翼純誠明亮經濟弘 化佐理功臣) 대광 보국 승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 夫)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 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신(臣) 최항(崔 恒) 지관사(知館事) 추충 정난 익대 순성 명랑 좌리 공신(推忠定難翊 戴純誠明亮佐理功臣) 승정 대부(崇政大夫) 판돈녕 부사 겸 지경연사(判敦寧府事兼知經筵事) 진산군 (晉山君) 신(臣) 강희맹(姜希孟) 순성 명랑 좌리 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자헌 대 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 겸 홍문관 제학(知中樞 府事兼弘文館提學) 남원군(南原君) 신(臣) 양성지 (梁誠之) 순성 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 가선 대부(嘉善大 夫) 형조 참판(刑曹參判) 광원군(廣原君) 신(臣) 이 극돈(李克墩)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예문관 전한 지제교 겸 경연 시강관 홍문관 전한 승문원 참고(行藝文館 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弘文館典翰承文院參校) 신(臣) 임사홍(任士洪)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의정부 사인(行議政府舍 人) 신(臣) 현석규(玄碩圭) 조산 대부(朝散大夫) 행 예문관 수찬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승문원 교검(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 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신(臣) 김종직(金宗直) (요약)	季昌 通訓大夫行承文院參校 臣成俔 通訓大夫司臚寺副正 臣朴楳 通訓大夫行議政府舍人 臣玄碩圭 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 臣金性源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 臣洪貴達 通訓大夫行奉常寺僉正 臣鄭永通 禦侮將軍行龍驤衛中郎司直 臣金新 通訓大夫行藝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 臣崔敬止 記注官: 通訓大夫行藝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臣盧公弼 通訓大夫行藝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臣鄭徹 通訓大夫行禮曹正郎兼承文院校理 臣李瓊全 奉正大夫行世子侍講文學 臣朴崇質 中直大夫行成均館典籍 臣柳自汾 中訓大夫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臣金克儉 中訓大夫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臣崔淑精 奉列大夫行刑曹正郎兼承文院校理 臣許謨 奉正大夫行藝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臣朴時衡 奉列大夫行禮曹正郎 臣金自貞 朝散大夫行議政府檢詳兼承文院校理 臣李則 記事官: 通訓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臣金潤宗 奉正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臣孫比長 朝奉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臣朴孝元 朝散大夫行兵曹佐郎 臣尹顯孫 朝散大夫行工曹佐郎 臣趙杵 朝散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臣金宗直 通德郎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臣南潤宗 通德郎行刑曹佐郎 臣楊守泗 通善郎行司憲府監察兼承文院校檢 臣金仲演 奉訓郎行司憲府監察 臣崔哲寬 承議郎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臣安琛 承議郎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臣蔡壽 承訓郎行藝文館副修撰知製敎兼(繼)〔經〕筵檢討官承文院校檢 臣金崙 通德郎行藝文館奉敎 臣安處良 宣敎郎行藝文館奉敎 臣俞造 承議郎行承政院注書 臣金源 奉訓郎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 臣孫昌 奉訓郎行藝文館奉敎兼經筵司經弘文館博士 臣楊子由 宣敎郎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弘文館著作 臣金悰 宣敎郎行藝文館待敎兼經筵說經 臣金楯 宣敎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臣姜居孝 宣務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 臣安晉生 承仕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臣鄭以僑 通仕郎行藝文館檢閱兼經筵典經弘文館正字 臣朴處綸

院叅校臣金紐
編修官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兼承文院叅校臣尹孝孫
編修官通訓大夫掌樂院正臣高台鼎
編修官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兼承文院叅校臣孫舜孝
編修官通訓大夫行藝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弘文
館典翰承文院叅校臣任士洪
編修官通訓大夫行司諫院司諫臣金永堅
編修官通訓大夫行藝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承文
院校裁臣金季昌
編修官通訓大夫行承文院叅校臣成倣
編修官通訓大夫行司贈寺副正臣朴楮
編修官通訓大夫行議政府舍人臣玄碩圭
編修官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臣金性源
編修官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臣洪貴達
編修官通訓大夫行奉常寺僉正臣鄭永通

成化五年己丑四月春秋館受
命始撰成化七年辛丑十二月畢
纂修官并錄官
領館事輸忠協策靖亂同德佐翼保社炳樂之難翊戴純誠明
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禮曹判書高靈府院君
臣申叔舟
領館事輸忠衛社協策靖亂同德佐翼保社炳樂之難翊戴純
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上黨府院
君兼領經筵事兵曹判書臣韓明澮
監館事輸忠衛社協策靖亂佐翼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
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寧城府
院君臣崔恒
知館事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判敦寧
府事兼知經筵事晉山君臣姜希孟

고전번역서 > 국조보감 > 국조보감 제16권 > 성종조 2 >
국조보감 제16권 / 성종조 2 7년(병신, 1476)

○ 3월 도승지 유지(柳輕)가 7년간 직임에 있었다
며 사직을 청하였다. 상이 경연지사 홍응(洪應)에
게 이르기를,
“형방 승지 **현석규(玄碩圭)**는 말과 행실이 모두 의
리에 맞고, 또 옥송(獄訟)을 시켜보니 원통한 사례
나 지체되는 경우가 없었다. 지금 그를 우대하여
도승지에 초배(超拜)하고자 하는 데, 옛날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가?”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세종조의 안송선(安崇善)과 세조조의 노사신(盧思
愼)이 어질고 능력이 있다 하여 도승지에 초배되
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에 **현석규**를 유지 대신
도승지로 삼았다.

○都承旨柳輕。以七年居職辭免。上謂
知經筵事洪應曰。刑房承旨**玄碩圭**。言
行皆當於義。且使獄訟無冤滯。今欲右
賢。超授都承旨。於古有例否。應對
曰。世宗朝之安崇善。世祖朝之盧思
愼。皆以賢能。超拜都承旨也。上乃以
碩圭。代輕爲都承旨。

者幾數十人。上命罷場。明日改試其策曰。天下之理。會在吾心。苟求其理。理無不通。蓋日月之行。有常度。而日月之蝕。亦有數。先儒以為精曆數者。雖百世可知也。然孔子於春秋。必書日蝕何歟。先儒又以為人君修德行正。則當食不食。既有常數。則為此說者。又何歟。且日者陽之精。月者陰之精。太陽太陰一而已。堯時十日並出。宋之兩日相盪。抑又何理歟。潮汐之說。先儒之論不同。其消息之理。可得聞歟。東海之無潮。錢塘之三日不至。抑

國朝寶鑑卷之十六

二

何理歟。火者陽之精。水者陰之精。各有其性。則有溫泉而無寒火。何歟。冰有蠶而火有鼠。抑有是理乎。橘渡淮而為枳。貉踰汶而死。又何理歟。洪範曰。王省惟歲。卿士惟月。庶民惟星。又言雨暘燠寒風。以為肅乂哲謀聖之應。曰雨曰暘曰燠曰寒曰風。果為五事之應乎。天下之理無窮。理無不通。然後可以言儒者矣。將欲觀子大夫窮理之學。其著于篇。○都承旨抑輒以七年居職辭免。上謂知經筵事洪應曰。刑房承旨玄碩圭言行皆當於義。

且使獄訟無冤滯。今欲右賢。超授都承旨。於古有例否。應對曰。世宗朝之安崇善。世祖朝之盧思慎。皆以賢能超拜都承旨也。上乃以碩圭代輒為都承旨。○教曰。諸司文書。為吏者率不檢藏。散逸太半。自今依中朝例。每衙門各置攝作綜懸籤。解由傳掌出納之際。該官親監。○罷院相。自大妃還政之後。諸大臣乞罷院相。上不聽。至是教曰。政院卑下。屈致大臣。心甚未安。且耆舊之臣。晨昏出入。有乖調養之道。院相自今罷休。○夏

國朝寶鑑卷之十六

三

六月旱。命漢城府五部修溝洫。淨阡陌。掩骼。復分遣注書史官於諸道。察官吏之奉行勤慢。○命蔡壽權健許琛俞好仁曹偉楊熙止等。賜暇讀書於山寺。先是。世宗朝。命集賢殿學士賜暇讀書。課製各體。賞賚而激勸之。由是人才輩出。及集賢殿罷。賜暇之法。亦隨而廢。至是。上命政府吏曹館閣堂上。抄啓讀書文臣。復撰勸獎事目。○事目一名其所於節季。開寫以修。一每朔三次。製述。與藝文館官。負月課。一時製述。等第勸獎。亦依藝文館施行。一正至及大慶。亡何。知經筵事徐昌大賀外。凡一會夕。○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옛날 성왕(成王)이 군진(君陳)830)에게 책명(策命)하기를, '내가 처벌하라고 하여도 그대는 <덮어놓고> 처벌하지 말며, 내가 용서하라고 하여도, 그대는 <덮어놓고> 용서하지 마시오. 오직 공정함을 따르시오.'하고, 또 이르기를, '간사하고 사악함에 습관이 된 자와 법도를 어기고 습속을 어지럽힌 자는 세 가지 중에서 조금만 범했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성왕(成王)의 시대는 상고(上古) 때로부터 멀지도 아니하고, 순박한 기풍과 후덕한 풍습이 대체로 볼 만한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 책명(策命)한 말이 이와 같이 정녕(丁寧)하고 반복한 것은, 법도를 어기고 습속을 어지럽힌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옛날의 제왕(帝王)이 형상(刑賞)을 신중히 하여 세도(世道)를 유지(維持)한 것은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신이 듣건대, 장리(贓吏) 김주(金澍)는 일에 간여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이 귀천(貴賤)으로 무려 백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주가 도망하였다면 그만이지만, 김주가 이미 나타났으면 진실로 마땅히 정상을 조사해서 죄를 정하여, 염치(廉恥)의 풍속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성명(成命)이 있으셔서 일이 반이나 핵실(覈實)되었는데, 어찌하여 핵실(覈實)함이 귀척(貴戚)과 대신(大臣)에게 미치면 성명(成命)을 거두시고, 전부 석방하여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전하께서 처음에 핵실하라는 명령이 옳았으면, 중도에 내버려두라는 명령이 잘못이며, 중도에 내버려두라는 명령이 옳으면, 당초에 핵실하라는 명령이 그른 것입니다. 시비(是非)는 반드시 하나로 귀결되며, <임금>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오히려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형벌을 가하고 상을 줄 때에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겠습니까? 옳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몸을 공손히 하시고 경근(敬謹)하시며, 아침 저녁으로 다스림을 도모하시어, 세도(世道)를 만회(挽回)하여 당(唐) 우(虞)의 지치(至治)를 이루려고 하시니, 그 마음 쓰심이 부지런하십니다. 비록 궁벽한 벽지의 우부(愚夫愚婦)일지라도 어느 누가 전하의 마음 쓰심을 알고 손을 들어 눈을 닦으며 태평의 다스림을 생각하여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정(朝廷)의 위에서는 염치(廉恥)의 도가 상실되고, 뇌물을 금하지 못하여, 절의(節義)와 예양(禮讓)의 풍도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다만 탄식과 통곡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근일에 승지(承旨)들이 동렬(同列)을 능욕(陵辱)하여 예양(禮讓)을 크게 무너뜨려서, 전하께서 중화(中和)로 다스림에 누(累)를 끼쳤습니다. 조정(朝廷)에서 먼저 스스로 예(禮)를 무너뜨리고 사양하지 않는다면, 사방에서 어찌 예양하는 풍도가 있겠으며 풍속이 순박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관자(管子)는 이르기를, '예의(禮義)와 염치(廉恥)는 나라의 사유(四維)이니,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군은 예의와 염치에 먼저 힘써서 세속을 숭상하도록 장려하고, 조정의 근본을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사유(四維)는 조정(朝廷)에 있어서의 신체(身體)의 사지(四肢)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한 눈이 보이지 않으면, 성인(成人)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유 중에> 하나의 예(禮)가 합하지 않고, 하나의 의(義)가 다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저 천하의 이치도 일찍이 이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어버이를 만나면 효도하고, 인군을 만나면 충성하며, 형제를 만나면 우애하고, 붕우(朋友)를 만나면 신임하여, 조종(祖宗)을 만나면 공경하고, 군려(軍旅)를 만나면 엄숙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또한 분개하여 거역하고, 서로 다투는 횡포가 없지 않았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예양(禮讓)이 없는 사람이 그 사이에 처하여 마음대로 자용(自用)831) 하고 예양을 버린 소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탁월(卓越)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예양에 비추어 보아서 족히 불만한 것이 없다면, 어찌 하루도 인주(人主)의 좌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주가 된 자는 진실로 마땅히 버려야 하되,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하고, 이를 물리치되, 오히려 멀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는 홍귀달(洪貴達)이 <자기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아뢴 것 때문에, 노여움이 극(極)해서 팔뚝을 걷어붙이고 동렬(同列)의 이름을 불러 욕하였으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홍귀달이 마음대로 아뢴 것은 진실로 죄가 있고, 현석규가 동렬(同列)의 이름을 들먹이고 조정(朝廷)을 능욕한, 무례(無禮)하고 사양하지 못한 죄 또한 크니, 용서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아마도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승(政丞)이 된 자가 찬성(贊成) 이하의 이름을 불러서 능옥하고, 육경(六卿)이 된 자가 참판(參判) 이하의 이름을 불러서 능옥하여 원근(遠近)에서 취(取)하고, 사방(四方)에서 보고 본받을 듯합니다. 이것을 물에 비유하면, 작은물[涓滴]이 흘러서 마침내 강과 바다의 깊음이 되는 것과 같이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현석규는 홍귀달과 비록 도승지·좌승지·우승지·동부승지의 이름이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품계로 말하면, 진실로 같은 승지입니다. 비록 주서(注書)의 하관(下官)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름을 불러 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귀달이 비록 죄과(罪過)가 있어도, 현석규는 진실로 노하기를 사납게 하고 입으로 분풀이를 해서는 안됩니다. 조용히 아뢰어서 법에 의해 처치하는 것이 예(禮)입니다. 지밀(至密)·지엄(至嚴)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정(市井)의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한 그릇의 밥과 한 사발의 국을 다투는 것같은 노여움으로 예양을 조정에서 무너뜨렸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일찍이 암실(暗室)·옥루(屋漏)832) 의 신독(愼獨)833) 의 학문에 힘쓰지 않아서,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이 나타날 때가 되어 나타나고, 보이지 않게 쌓인 것이 드러날때가 되어 드러나, 마침내 때때로 <그 성정(性情)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홍귀달이 마음대로 아뢴 죄는 가볍고, 현석규가 예양을 조정에서 무너뜨린 죄는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간(臺諫)들이 이것을 말하는데도, 전하께서 듣지 않으시니, 신이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언로(言路)를 크게 열어서서 간(諫)함을 받아들이기를 너그럽게 하시어 비록 꿀 베고 나무하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몸을 굽혀 따르지 않음이 없으셔서, 한 마디 말이 합당하지 못하다 하여 그 말의 근원을 찾아 간언(諫言)을 싫어한 뜻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현석규의 일에 대해서만 간관(諫官)에게 말을 들은 연유를 하문(下問)하십니까? 비록 규문(閨門)의 은미(隱微)한 일일지라도 끝내 숨겨서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일 수가 없는 데, 하물며 현석규는 정원(政院)의 위에서 예의없는 행동을 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나라 안에 전문(傳聞)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간관에게 말을 들은 연유를 물으시는 것은, 바로 현석규에게 사사로이 하는 정(情)이 지극하기 때문이십니다. 신은, 전하께서도 현석규에게 사정(私情)을 두려고 하시는 뜻을 스스로 아시지 못하시고, 도리어 간언(諫言)을 거절하는 조짐을 삼으셔서, 간관을 싫어하시는 싹이 <전하의> 마음에 이미 트셨을까 염려됩니다.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현석규가 예양을 무너뜨린 죄는 오히려 말할 만합니다. <현석규는> 전하로 하여금 간언을 거절하는 형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사방에 의심스럽게 전해지고, 사책(史冊)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는데 이르게 하였습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렀음을 생각하니, 신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언관(言官)이 바야흐로 자기의 일을 탄핵하면, **현석규**는 진실로 마땅히 대죄(待罪)하기에 겨를이 없고, 전하의 밝으신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데, 간관(諫官)이 말이 있으면 현석규도 말이 있어 서로의 말을 가지고 그 일을 질정하니, 이것은 현석규가 동렬(同列)을 정원(政院) 안에서만 능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관(諫官)과 더불어 시비(是非)를 전폐(殿陛) 사이에서 다투어 은연(隱然)히 저지하고 꺼리게 한 것입니다. 현석규도 역시 스스로 말하기를, ‘노여움이 극하여 입에서 거품이 나왔고, 더위로 인하여 소매를 걷어올렸는데, 홍귀달이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여움이 복받치고 무례한 형상을 스스로 진정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현석규를 예양(禮讓)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시겠습니까? 조정(朝廷)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고 하시겠습니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문득 현석규에게 간관(諫官)과 대(對)해서 서로 계달(啓達)하는 말로써 특별히 그 뜻을 스스로 다하게 하여, 그 일을 아뢰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신하가 임금에게, 간관(諫官)이 저를 탄핵(彈劾)한 때에 갑자기 모두 분잡하게 말하고, 직접 군상(君上) 앞에서 말할 수 있게 하여 그 뜻을 펼 수 있게 한다면, 국가에 형률(刑律)을 맡은 관헌과 일을 결단하는 관리가 있다 한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석규가 다만 예(禮)를 조정(朝廷)에서 무너뜨린 것만이 아니고, 전하의 앞에서 무례(無禮)하게 하여, 간관을 은근히 억압하고,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전수(傳守)되는 조정(朝廷)은 상법(常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로부터 승지(階闈)의 임무는 조석(朝夕)으로 받들어 모시며 기뻐하고 노여움을 엿보고, 근심하고 편안함을 살피어, 말함에는 뜻을 어김이 없고, 행동에는 주정(主情)을 맞추므로, 쉽게 친해지는 가까움이 있고, 꺼릴 만한 태도가 없습니다. 은혜는 친압으로 생기고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굳어집니다. 노기(盧杞)834) 와 진회(秦檜)835)의 간계(奸計)가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는데 이르렀는데도, 당시의 인주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고 이를 갈게 합니다. 아아, 애석한 일입니다. 스스로 지인(至人)·군자(君子)가 아니고서는 임금의 지우(知遇)를 받아 친밀한 형세가 있으면, 눈을 치뜨고 흘려보며 담소(談笑)하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행하며 조정의 근심이 되고 한 세상의 풍속을 그르치지 않은 자는 대개 드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현석규가 홍귀달에게 노한 것은 일이 혹 그렇더라도, 예양(禮讓)으로써 서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분려(忿戾)하여 무례(無禮)하게 서로 <책망을> 가하였으니, 현석규는 진실로 지인(至人)·군자(君子)가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현석규는 한결같이 응대(應對)하여 일을 다스리는 데 능란한 관리입니다. 이미 예양(禮讓)하는 덕(德)이 없고, 폭력(暴戾)836) 한 기운만이 있으며, 또 조금은 재주가 있으나, 진실로 소인(小人)보다 더욱 심한 자입니다.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는 현석규에게서 무엇을 취하셔서 능히 버리지 못하십니까? 그 재주는 무례(無禮) 불양(不讓)함을 보충하는 데 부족하여, 조정을 욕되게 하고, 전하의 요(堯) 순(舜)같은 다스림에 누(累)를 끼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무례하기가 무상(無狀)함이 이와 같으니, 그것을 엄폐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에서 반드시 통분해 하고, 원근(遠近)에서 경해(驚駭)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도리어 임사홍(任士洪)과 손순효(孫舜孝)와 한한(韓僞) 등이 현석규의 일을 서로 전해 말한 죄를 다스리고, 현석규가 이미 범한 죄는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임사홍이 현석규가 말하지 않은 말을 말하고, 현석규가 형용하지 않은 형용을 형언하여, 슬그머니 대간(臺諫)을 사주(使喚)해서, 현석규를 모함하려 하였다.' 하면, 임사홍의 죄도 천직(遷職)하는 데 그칠 뿐이 아니며, 만약에, '현석규가 무례(無禮)한 형상(形狀)과 불양(不讓)한 언어(言語)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사홍 등은 진실로 남의 시비(是非)를 거론하여 말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면, 신은 아마도 전하께서 현석규의 사사로움을 덮어 주고 엄폐하여 주는 것이 사방에 들려서, 나라 사람들이 전하의 천심(淺深)을 엿볼 듯합니다. 더구나 사간(司諫) 박효원(朴孝元)과 참의(參議) 노공필(盧公弼)은 모두 현석규의 일을 서로 전해 말한 자들인데, 지금 모두 <이들은> 천직(遷職)하여 강등(降等)해 제수하고, 전하께서 현석규를 대우하심은 더욱 후하고 더욱 친밀하게 하시니, 신은 아마도 이 뒤로는 현석규와 같이 가깝고 친밀한 신하가 비록 크게 불측(不測)하고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전하를 위하여 경솔히 말하지 못하고, 조정(朝廷)에서는 발만 붙이고 설 것이며, 대간(臺諫)은 혀[舌]를 놀리지 아니하고 서로 경계할 것이니,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화(禍)가 이로부터 생길 듯합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왕(成王)이 용서하고 처벌하는 데 오직 공정함을 따르고, 세 가지 중에서 조금만 범했더라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지극히 삼가는 경계에 생각을 두시어, 현석규의 죄와 김주의 일을 밝게 다스리셔서, 조정의 무례(無禮)·불양(不讓)한 풍습을 막으시고, 조정의 염치(廉恥)와 절의(節義)의 행습(行習)을 권려하시고, 언로(言路)를 여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풍속은 백 년 동안 쌓았더라도 부족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하루만 하여도 남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열성(列聖)이 서로 계승하신 백 년 안의 예양(禮讓)의 풍습을 현석규가 한 번 노(怒)한 분한(忿恨)에 비롯하여 무너뜨릴 수 없으며, 전수(傳守)되는 조정의 상법(常法)을 전하께서 현석규와 귀근 대신(貴近大臣)을 사사로이 하는 데에 비롯하여 흔들릴 수 없습니다. 신은 비록 언관(言官)의 반열(班列)에는 있지 않으나, 재상(宰相)에 대죄(待罪)한 지 지금까지 대개 누조(累朝)가 됩니다. 대간(臺諫)이 하는 말을 전하께서 윤허하지 않으시고, 조정(朝廷)의 사의(事宜)가 예(禮)에 합당하지 않으면, 재상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또한 그 직분입니다. 대간(臺諫)의 여러 사람이 의논한 말은 만세(萬世)의 공변(公辨)된 말입니다. 전하께서 지난번에 홍칭(洪稱)의 일로 인하여 간원(諫院)의 차자(劄子)에 비답하시기를,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게 되고, 임금은 간언(諫言)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 하니, 내 일찍이 이 말을 세 번 반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대저 국내의 신민(臣民)이 머리를 들어 서로 말하면서 모두들 기쁘게 도로(道路)에서 경하한 지가 겨우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대간(臺諫)의 말을 윤허하지 않으시면, 전하께서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할 것은 말을 돌아보는 도리에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간언을 따르신 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의와 염치는 조정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으며, 한 가지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인심(人心)이 보고 본받는 것은 세도(世道)의 승강(升降)에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큼니다. 신은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 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성충(聖聰)을 우러러 번독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8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9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註 830]군진(君陳) : 주(周)나라 성왕의 신하.

[註 831]자용(自用) : 자기의 재능을 믿고 만사를 처리하며 남의 말을 듣지 않음.

[註 832]옥루(屋漏) :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

[註 833]신독(愼獨) :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행동을 삼감.

[註 834]노기(盧杞) : 당(唐)나라 사람.

[註 835]진회(秦檜) : 남송(南宋) 때의 재상으로, 간신의 대표적 인물.

[註 836]폭려(暴戾) : 사납고 모질.

○武靈君 柳子光上疏曰:

臣聞昔成王策命君陳曰: "予曰辟, 爾惟勿辟 予曰宥, 爾惟勿宥, 惟厥中。" 又曰: "狃于姦(究)[宄], 敗常亂俗, 三細不宥。" 成王之時, 去古未遠, 淳風厚俗, 概可相見, 然而君臣之間策命之辭如是, 其丁寧反覆, 猶恐其有敗常亂俗之人, 而宥辟之不中焉。 古之帝王慎於刑賞, 維持世道, 可謂至矣。 臣聞賊吏金澍事干受贈之人, 凡貴賤無慮百數。 金澍在逃則已矣, 金澍既見, 則固宜窮情定罪, 以勵廉恥之俗。 殿下已有成命, 事半歸覈, 奈何覈及貴戚大臣, 則遂收成命, 全釋不治乎? 殿下初覈之命是, 則中棄之命非也, 中棄之命是, 則初覈之命非也。 是非必居一焉, 一嚔一笑, 尚不可不愛, 況於刑賞之際所關者大乎? 伏惟殿下卽位以來, 恭己敬謹, 宵旰圖治, 欲挽回世道, 以致唐、虞之治, 其用心也, 勤且勞矣。 雖窮隅僻地愚夫愚婦, 孰不知殿下用心, 而舉手拭目, 想望太平之治乎? 然而朝廷之上廉恥道喪, 賄賂之莫禁, 節義禮讓之風無聞焉。 言之至此, 不但太息痛哭而已。 近日承旨陵辱同列, 大壞禮讓, 以累殿下中和之治。 朝廷先自壞禮不讓, 則四方安有禮讓之風, 而風俗可淳乎? 管子曰: "禮義廉恥, 國之四維也, 四維不張, 何以爲國?" 是以治世之君, 莫不先於禮義廉恥, 以勵俗尚而爲朝廷之本。 四維之於朝廷, 如四肢之於身體也。 一指不伸, 一目不見, 不可曰成人也, 一禮不合, 一義未盡, 不可曰治國也。 夫天下之理, 未嘗出於遇親則孝, 遇君則忠, 遇兄弟則友, 遇朋友則信, 遇宗朝則敬, 遇軍旅則肅, 而其間亦未嘗無忿戾爭鬪之暴, 是不過一無禮讓之人, 間於其間, 專擅自用, 棄禮讓之所致也。 雖有卓越之才, 顧於禮讓而無足可觀, 則安可一日在人主左右? 而爲人主者固宜去之猶恐不及, 退之猶恐不遠也。 今都承旨玄碩圭因洪貴達擅啓, 怒極而攘臂, 名同列而辱之。 臣愚竊以爲貴達之擅啓, 信有罪矣, 而碩圭之舉名同列, 陵辱朝廷, 無禮不讓之罪亦大矣, 不可原之而不治也。 臣恐此而不治, 爲政丞者名贊成以下而陵辱之, 六卿者名參判以下而陵辱之, 遠近取則, 四方觀效。 比之於水, 涓滴之流, 終爲江海之深, 而莫之橫塞也。 況碩圭之於貴達, 雖有都左右同副之號有差, 言其秩則固一般承旨也。 雖注書下官, 亦不可名之而辱之也。 貴達雖有罪過, 碩圭固不可暴於怒而憤於口也。 從容以啓, 置之於法, 禮也。 在至密至嚴之地, 爲市井無賴之徒爭簞食豆羹之怒, 唱壞禮讓於朝廷, 其爲人可知矣。 豈非未嘗致力於暗室屋漏之學, 而隱之所藏待顯而露, 暗之所蓄待明而彰, 終有時而不可掩者乎? 臣愚竊謂貴達擅啓之罪輕, 而碩圭唱壞禮讓於朝廷之罪重矣。 臺諫言之, 而殿下不聽, 臣竊惑焉。 殿下自卽位以後, 大開言路, 優容納諫, 雖芻蕘之言, 無不屈己以從, 未聞有一言不合而尋其言根以示厭諫之意。 奈何今於碩圭之事, 獨下問諫官聽言之由? 雖閤門隱微之事, 終不得掩覆而能欺人欺天, 況碩圭不禮於政院之上, 而其不傳聞於國中乎? 殿下所以問諫官聽言之由, 乃所以私碩圭之至。 而臣恐殿下亦不自知欲私碩圭之意, 反爲拒諫之漸, 而厭諫之萌已芽蘖於方寸之地矣。 然則碩圭唱壞禮讓之罪, 猶可說也。 至使殿下不覺有拒諫之形, 傳疑四方, 書之史冊, 流之後世。 言念至此, 臣無以爲心。 言官方彈己事, 碩圭固當待罪之不暇, 以待殿下之明命, 諫官有言, 則碩圭亦有言, 互相有言, 以質其事, 是碩圭不但陵辱同列於院中, 又與諫官爭是非於殿陛之間, 而隱然沮抑之慴懣之也。 碩圭亦自言曰: "怒極而口出涎沫, 因暑而攘臂, 貴達則名之。" 然則其怒之暴, 不禮之狀, 自不能遁情而逃於辭也。 未知殿下以碩圭爲不壞禮讓乎? 不辱朝廷乎? 得無罪乎? 殿下儻以碩圭對諫官互相以啓之言, 特自盡其情, 欲白其事爾。 若臣之於君, 方諫官彈我之時, 遽皆紛紜, 直有言於君上之前, 而能伸其情, 則國之有刑律之官、斷事之吏, 亦何所用哉? 是碩圭不但壞禮於朝廷, 又不禮於殿下之前, 而陰抑諫官, 以壞祖宗傳守朝廷之常法也。 自古階關之任, 朝夕陪奉, 覘歡慍, 候慘舒, 舉無謬旨, 動中主情, 有易親之密, 無可憚之姿。 恩以狎生, 信由恩固。

盧杞、秦檜之奸，終至於誤國，而當時人主莫之知也，至今使人寒心切齒也。吁可惜哉！自非至人君子，而結人主之知，有親密之勢，則不行胸臆於談笑睚眦之間，而為朝廷之患，誤一世之俗者蓋鮮矣。臣愚竊謂碩圭之怒於貴達，則事或然矣，不能以禮讓相責之，遽為忿戾以不禮相加，則碩圭固非至人君子也明矣。然則碩圭一應對治事之能吏耳。既無禮讓之德，有暴戾之氣，又少有才焉，則實小人之尤者也。未知殿下何取於碩圭而不能去之也？其才不足以補無禮不讓以辱朝廷而累殿下堯、舜之治之罪矣。其不禮無狀如此，其不可掩也。朝廷之必痛憤也，遠近之所驚駭也。殿下奈何又反治任士洪、孫舜孝、韓侂等傳相有言碩圭之事之罪，而不治碩圭已犯之罪乎？若曰："士洪言碩圭不言之言，形碩圭不形之形，陰嗾臺諫，欲陷碩圭也"，則士洪之罪，非止於遷職而已。若曰："碩圭雖有不禮形狀不讓言語，士洪等固不可論人是非而有言也"，則臣恐殿下掩覆碩圭之私，聞於四方，而國人以窺殿下之淺深也。況司諫朴孝元、參議盧公弼，皆傳相有言碩圭之事者也，今皆遷職降授，而殿下之遇碩圭也愈厚愈密，則臣恐此後如碩圭近密之臣，雖有大不測誤國之事，人不能輕為殿下言之，而朝廷重足而立，臺諫結舌而相戒也，壅蔽之禍，從此而生也。伏望殿下留念成王有辟之惟厥中、三細之不宥，至謹之戒，明治碩圭之罪、金澍之事，以杜朝廷無禮不讓之風，以勵朝廷廉恥節義之行，以開言路幸甚。先儒曰："風俗積之百年而不足，毀之一日而有餘。"我國家列聖相承百年之內禮讓之風，不可始碩圭一怒之忿而毀之也，傳守朝廷之常法，不可始殿下私碩圭與貴近大臣而撓之也。臣雖不在言列，待罪宰相，蓋累朝于茲矣。臺諫有言，殿下不允，朝廷事宜，不合於禮，則宰相從而言之，亦其職也。臺諫衆議之言，公萬世之言也。殿下向因洪僞事批諫院劄曰："木從繩則直，后從諫則聖，予嘗三復此言矣。"凡國內臣民，無不舉首相告，欣欣然相慶於道，才過數月耳，今而不允臺諫之言，則未知殿下之言顧行行顧言何？未知殿下從諫之實安在？禮義廉恥之於朝廷，不可須臾離也，不可一事忽也。人心觀化世道升降，所關者至重至大。臣不敢含默，干冒萬死，仰瀆聖聰。

殿下中和之治朝廷先自懷讓不讓則四方安有禮讓之風而風俗可淳乎管子曰禮義廉恥國之四維也四維不張何以為國是以治世之君莫不先於禮義廉恥以勵俗尚而為朝廷之本四維之於朝廷如四肢之於身體也一指不伸一目不見不可曰成人也禮不合一義未盡不可曰治國也夫天下之理未嘗出於遇親則孝遇君則忠遇兄弟則友遇朋友則信遇宗朝則敬遇軍旅則肅而其間亦未嘗無忿爭鬪之暴是不過一無禮讓之人間於其間專擅自用棄禮讓之所致也雖有卓越之才顧於禮讓而無足可觀則安可一日在人主左右而為人主者固宜去之猶恐不及之猶恐不逮也今都承旨玄碩圭因洪貴達擅啓怒極而攘臂名同列辱辱之臣愚竊以為貴達之擅啓信有罪矣而碩圭之舉恐此而不治為政者名贊成以下而陵辱之六卿者名參判以下而陵辱之遠近取則四方觀效比之於水洧滴之流終為江海之深而莫之橫塞也況碩圭之於貴達雖有都左右副同之號有

斷罪終身不叙以懲其惡又今復配以正風俗不聽○武靈君柳子光上疏曰臣聞昔成王策命君陳曰予曰辟爾惟勿辟予曰宥爾惟勿宥惟厥中又曰狃于姦究敗常亂俗三細不宥成王之時去古未遠淳風厚俗槩可相見然而君臣之間策命之辭如是其丁寧及覆猶恐其有敗常亂俗之人而有辟之不中焉古之帝王慎於刑賞維持世道可謂至矣臣聞賊吏金澍事于受贈之人凡貴賤無慮百數金澍在逃則已矣金澍既見則固宜窮情定罪以勵廉恥之俗殿下已有成命事半歸覈奈何覈及貴戚大臣則遂收成命全釋不治乎殿下初覈之命是則中棄之命非也中棄之命是則初覈之命非也是非必居一焉一嘆一笑尚不可不愛況於刑賞之際所關者大乎伏惟殿下即位以來恭已敦謹宵旰圖治欲挽回世道以致唐虞之治其用心也勤且勞矣雖窮隅僻地愚夫愚婦孰不知殿下用心而舉手拭目想望太平之治子然而朝廷之上庶恥道喪賄賂之莫禁節義禮讓之風無聞焉言之至此不但大息痛哭而已○日承旨陵辱同列大壞禮讓以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8일 계미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손비장·한명회·경준 등과 **현석규**의 일·김주 등의 죄·서거정의 서용 등에 대해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대사간(大司諫) 손비장(孫比長)이 아뢰기를,

"어제 본원(本院)에서 **현석규(玄碩圭)**가 홍귀달(洪貴達)의 이름을 부르고 너라고 일컬은 것 등의 일을 아뢰었더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나직(羅織)하였다.'고 하시니, 황공(惶恐)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나직이라 이르는 것은 무죄(無罪)한 자를 엮고 모함하는 것을 이름입니다. 현석규의 일은 박효원(朴孝元)이 노공필(盧公弼)에게 듣고, 노공필은 임사홍(任士洪)에게 들었다고 하니, 신 등은 직임이 연관(言官)에 있으면서 어찌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마땅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전하께서는 재택(裁擇)할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나직(羅織)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현석규가 갑자기 노(怒)하여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홍귀달의 이름을 부르고 너라고 일컬으며 욕하였다.'고 하니, 이른바 소매를 걷어 올렸다는 것은 사람이 나를 겨루려고 함에, 내가 치려고 하여 노기를 담아서 하는 것이니, **현석규**가 우연히 소매를 걷어 올린 것이요, 기운이 시킨 것이 아니다. 사람은 진실로 본시 태도가 이와 같은 자가 있는 것이니, 그 홍귀달의 이름을 부른 것도 또한 너[爾]·너[汝]라고 일컫는 것과 같지 않으니, 어찌 욕하였다고 말하겠는가?"

하였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말하기를,

"군신(君臣)과 상하(上下)가 화목한 뒤에야 조정(朝廷)이 편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승정원(承政院)은 정교(政敎)가 나오는 곳인데, 이런 일이 있음을 노신(老臣)이 듣고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장령(掌令) 경준(慶俊)이 말하기를,

"현석규가 도리로써 아래 사람을 거느렸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위는 예(禮)가 없고, 아래는 의(義)가 없어서 이를 초치한 것이니, 승정원(承政院)은 모두 허물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언로(言路)를 흐르는 냇물에다 비유하였으니, 냇물이 막히면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언로(言路)를 막으면 하정(下情)이 위로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실로 말의 근원을 물으시면, 사람이 장차 그 연달아 연루됨을 두려워할 것인데, 누가 대간(臺諫)으로 더불어 즐겨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도 또한 하정을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실(情實)은 묻지 않고, 오직 소사(所司)의 말만 옳다고 하여 따른다면, 소사의 말이 어찌 다 정당한 데서 나온 것임을 알겠는가?"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신 등도 또한 어찌 한결같이 소사(所司)의 말을 따르라고 이른 것이겠습니까? 다만 소사에서는 말을 하고, 전하께서는 재단(裁斷)하시되, 모름지기 그 말의 유래를 묻지 말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후로는 마땅히 말의 근원을 묻지 않겠다."

하였다. 경준이 말하기를,

"조씨(趙氏)는 사족(士族)의 부녀(婦女)인데, 이제 의금부(義禁府)에서 상녀(常女)의 화간(和奸)한 예(例)로 조율(照律)하여, 단지 장(杖) 80대를 수속(收贖)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여 부득이 응하였더라도 그러나 크게 징계하지 않으면 후세 사람을 어떻게 징계시키겠습니까? 또 김주(金澍)는 전죄(前罪)가 짝 차서 죽어도 여죄(餘罪)가 있습니다. 다행히 천주(天誅)를 도피하여서 여명(餘命)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궁항(窮巷)에 숨어 있어야 옳았을 것인데, 사령(赦令)이 내린 다음날에 뻔뻔스러운 낯으로 출두하여, 또 패상(敗常)의 죄(罪)를 범하였으니, 청컨대 김주와 조씨는 원방(遠方)에 정속(定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선왕(先王)의 법률(法律)은 내리고 올릴 수 없습니다. 조씨(趙氏)는 동생(同生)에게 용납되지 못하자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이제 율외(律外)로 처단함은 미편(未便)합니다. 또 김주(金澍)는 무상(無狀)한 소인(小人)이라 극형(極刑)에 두더라도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또한 율외(律外)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극배(李克培)는 말하기를,

"부인(婦人)의 덕(德)은 일부(一夫)를 종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씨(趙氏)는 위로 부모가 없고, 아래로 의뢰할 데가 없으니, 끝내 절의(節義)를 지키고 죽으면 착하거니와, 김주(金澍)를 따른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왔으니 생활할 길이 있는데도 음란한 행동을 한 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공강(共姜)의 백주(柏舟)720)의 일은 후세(後世)에 법으로 전할 수 있었다. 진실로 기한(飢寒)으로 실절(失節)하였다면, 음란한 풍습이 어찌 그쳐지겠는가? 소사(所司)의 말이 내 마음에 합당하니, 내 장차 짐작하여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손비장이 또 아뢰기를,

"서거정(徐居正)은 처음에,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로서 베[布]를 통사(通事)에게 주어, 저자에서 중국 물건을 구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친문(親問)하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고 천총(天聰)을 기망(欺罔)하였다가, 파직(罷職)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서용하였으니, 너무 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상(二相)을 파직(罷職)한 것이 징계(懲戒)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7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註 720]공강(共姜)의 백주(柏舟) : 공강(共姜)은 위(衛)나라 태자(太子) 공백(共伯)의 아내로서 태자가 일찍 죽었으

나 수절(守節)하였으며, 백주시(栢舟詩)를 지어 자신의 회포를 달래었음. 백주(栢舟)는 《시경(詩經)》 용풍(鄘風)의 편명임.

○御經筵。講訖，大司諫遜比長啓曰："昨日本院啓玄碩主呼洪貴達名稱爾汝等事，傳曰：'汝等羅織'，臣等不勝惶恐。所謂羅織者，構陷無罪者之謂也。碩主事，朴孝元聞於盧公弼，公弼聞於任士洪，臣等職在言官，豈容含默？臣等當知無不言，而殿下裁擇而已。"上曰："此非羅織而何？其曰'碩主遽怒攘臂，呼貴達之名稱爾而辱之'，所謂攘臂者，人欲抗我而我欲搏之，盛怒而爲也，碩主偶然攘臂，非使氣也。人固有本態如此者，其呼貴達之名，亦非與稱爾汝者同也，豈曰辱之乎？"領事韓明澮曰："君臣上下和睦，而後朝廷得安。承政院政教之所自出，而有此事，老臣聞之，不能安心。"掌令慶俊曰："碩主以道率下，則安有如此事乎？"是上無禮，下無義，以致此耳，承政院皆有過。古人以言路譬之流川，川壅則不下流，言路塞則下情不上通。苟問言根，則人將畏其連逮，孰肯與臺諫語哉？然則殿下亦不得聞下情矣。"上曰："不問情實，惟所司之言是從，則所司之言，安知盡出於正也？"比長曰："臣等亦豈謂一從所司之言乎？但所司言之，而殿下裁斷，不須問其言之所自也。"上曰："今後當不問言根矣。"俊曰："趙氏，士族婦女，而有淫行。今義禁府以常女和奸之例照律，只令杖八十收贖，此雖飢寒切身，不得已而應之，然不大懲，則後人何所戒乎？且金澍前罪貫盈，死有餘辜。幸逃天誅，得保餘命，是宜伏於窮巷，而赦下明日，覩面出頭，又犯敗常之罪，請澍及趙氏遠方定屬何如？"上問左右。韓明澮對曰："先王法律不可低昂。趙氏不得見容於同生，而飢寒切身，故至於如此，今以律外斷之未便。且金澍無狀小人，置之極刑，有何不可？然亦律外也。"知事李克培曰："婦人之德，莫大於從一。然趙氏上無父母，下無所仰，終守節義而死則善矣，從金澍，出於不得已，非與計活有餘而淫奔者比也。"上曰："不然。共姜《栢舟》之事，可以垂法後世。苟以飢寒而失節，則淫亂之風，曷有其已？所司之言，合乎予心，予將斟酌處之。"比長又啓曰："徐居正初以司諫院提調，授布通事，求市漢物，事覺親問，不以實對，欺罔天聰，罷職未幾而復敘，無乃太急乎？"上曰："以二相罷職，其無懲戒乎？"

義李令崇中直司憲府掌令鄭佑嘉善黃海道觀察使○癸未
受常然○御經筵講訖大司諫孫比長啓曰昨日本院啓玄碩
主呼洪貴達名稱爾汝等事傳曰汝等羅織臣等不勝惶恐
所謂羅織者構陷無罪者之謂也碩主事朴孝元聞於盧公弼
公弼聞於任士洪臣等職在言官豈容含默臣等當知無不言
而殿下裁擇而已上曰此非羅織而何其曰碩主遽怒攘
臂呼貴達之名稱爾而辱之所謂攘臂者人欲抗我而我欲搏
之盛怒而爲也碩主偶然攘臂非使氣也人固有本態如此
其呼貴達之名亦非與稱爾汝者同也豈曰辱之乎領事韓
明澮曰君臣上下和睦而後朝廷得安承政院政教之所自出
而有此事老臣聞之不能安心掌令慶俊曰碩主以道率下則安
有如此事乎是上無禮下無義以致此耳承政院皆有過古人以
言路譬之流川川壅則不下流言路塞則下情不上通苟問言
根則人將畏其連逮孰肯與臺諫語哉然則殿下亦不得聞
下情矣上曰不問情實惟所司之言是從則所司之言安知

盡出於正也比長曰臣等亦豈謂一從所司之言乎但所司言
之而殿下裁斷不須問其言之所自也上曰今後當不問
言根矣俊曰趙氏士族婦女而有淫行今義禁府以常女和奸
之例照律只令杖八十收贖此雖飢寒切身不得已而應之然
不大懲則後人何所戒乎且金澍前罪貫盈死有餘辜幸逃天
誅得保餘命是宜伏於窮巷而赦下明日覩面出頭又犯敗常
之罪請澍及趙氏遠方定屬何如上問左右韓明澮對曰先
王法律不可低昂趙氏不得見容於同生而飢寒切身故至於
如此今以律外斷之未便且金澍無狀小人置之極刑有何不
可然亦律外也知事李克培曰婦人之德莫大於從一然趙氏
上無父母下無所仰終守節義而死則善矣從金澍出於不得
已非與計活有餘而淫奔者比也上曰不然共姜栢舟之事
可以垂法後世苟以飢寒而失節則淫亂之風曷有其已所司
之言合乎予心予將斟酌處之比長又啓曰徐居正初以司諫
院提調授布通事求市漢物事覺親問不以實對欺罔天聰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임금을 섬김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라 하였으니, 신하가 임금 섬기는 것은 자식이 아비 섬기는 것과 같은데, 어찌 간격이 있겠습니까? 만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효성스럽지 못하면, 천리(天理)가 없어지고 인도(人道)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신은 미천한 데에서 일어나서 벼슬이 극품(極品)에 이르렀는데, 돌아보건대 형제·족친의 세력이 없고 단독 일신으로 세상에 외롭게 서서 일을 만나면 과감하게 말하니, 믿는 것은 다만 전하의 일월(日月) 같은 밝으심이요 기약하는 것은 한 마음의 진실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지난번에 **현석규(玄碩圭)**와 **임사홍(任士洪)**·**손순효(孫舜孝)**·**한한(韓澗)**·**홍귀달(洪貴達)** 등의 사정의 옳고 그른 것과 상벌의 다르고 같은 것을 논하고 물러가 대죄(待罪)하였는데, 뜻밖에도 전하께서 신의 미치고 참람한 것을 용서하시었으니 천지(天地)가 생성(生成)하는 은혜가 이미 재가 된 뼈다귀에서 다시 소생시키는 것 같아서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석규의 뛰어 옳긴 것이 또 나라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당 덕종(唐德宗)이 이필(李泌)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노기(盧杞)가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하니, 이필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노기가 간사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아마도 현석규에게 정히 노기와 같은 간사가 있는데도 전하께서 우연히 미처 살피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신이 듣건대, 제갈 공명(諸葛孔明)이 후주(後主)에게 말하기를,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함께 일체가 되어서 착한 자를 승진시키고 착하지 않은 자를 벌주기를 다르게 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간사한 짓을 하고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형벌과 상을 의논하여 폐하(陛下)의 평명(平明)한 다스림을 밝히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이 선한(先漢)이 흥하고 융성한 까닭이며, 소인을 가까이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한 것이, 후한(後漢)이 기울고 위태하여진 까닭입니다.' 하였다 합니다. 공명(孔明)이 출사(出師)하는 날을 당하여 반드시 적을 헤아리고 승리를 획책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행진(行陣)과 갑주(甲冑)의 일을 말할 것인데, 오히려 급급하게 형벌과 상을 공평하게 밝게 하여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을 말한 것은, 그 마음에 반드시 생각하기를, '신하가 비록 적을 헤아리고 승리를 획책하는 데에 능하더라도, 임금이 만일 형벌과 상을 소홀히 하고 또 군자·소인의 진퇴에 소홀히 한다면, 촉(蜀)나라가 먼저 촉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위(魏)나라를 쳐서 천하를 통일하여 선제(先帝)가 남긴 뜻을 받들겠느냐?' 하였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은미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사랑하는 정성이 늠연(凜然)하여, 지금 천년이 되었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벌떡 일어서게 합니다. 신이 앞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홍귀달이 일을 아뢰는 것이 그러면 현석규가 비록 분노하여 예를 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허물이 될 것이 없고, 이극기(李克基) 이하 다섯 승지(承旨)가 의논이 같은데 현석규가 홀로 불가하다 하였으니, 현석규가 옳고 다섯 승지가 또한 그르다.' 하셨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사람은 각각 자기 소견이 있으므로, 홍귀달이 만일 한한의 청축을 듣지 않고 다만 자기 소견을 가지고 논계하였다면 홍귀달이 아뢰는 것은 실로 뜻을 두지 않은 행동이겠으나, 현석규가 아뢰기를, '송익손(宋益孫)이 신에게 청하였으니 홍귀달도 반드시 한한의 청축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노공필(盧公弼)의 아우 노공유(盧公裕)는 송익손의 사위이니, 노공필이 이것을 위하여 말을 하여 신을 중상한 것입니다.' 하고, 또 무근(無根)한 말로 아뢰기를, '이것은 임사홍(任士洪)이 가만히 사주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기는 것이 천리(天理)이고 인정(人情)입니다. 송익손이 과연 송호(宋瑠)의 아버지라면 비록 천만 냥을 현석규에게 뇌물로 주더라도 괜찮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시호(豺虎)입니다. 송익손이 비록 말을 하더라도 현석규가 듣지 않고 말면 됩니다. 또 노공필이 과연 아우의 아내의 집 일을 위하여 현석규를 중상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임사홍이 본래 무슨 혐의가 있어서 음주(陰賊)하는 데에 이르렀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현석규가 간관에게 대하여 서로 아뢰어 말한 것입니다. 만일 홍귀달이 한한의 청을 들어서 틈을 타서 아뢰어 성충(聖聰)을 기망하여 임금을 속이고 사사를 행하고자 하였다면, 홍귀달과 한한은 그 죄가 죽여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임사홍과 노공필의 말이 또 과연 음주(陰賊)한 것이라면, 죄가 비록 죽는 데는 이르지 않으나 또한 큼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석규가 마땅히 그 죄로 반좌(反坐)되어야 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현석규는 사기(事機)에 따라 속여서 험한 말을 하였으니, 교활하게 속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이 의논이 만일 일호

라도 미진(未盡)하여 사정에 지나치다면, 전하께서 신을 유사에 회부하여 신이 망령되게 말한 죄를 다스리소서. 신이 이 일에 대하여 말없이 있지 못하고 반복해서 전하를 위하여 말하여 마지 않는 까닭은, 바깥 의논이 모두 현석규를 그르다 하는데 전하께서 미처 살펴 깨닫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요지언(芻蕘之言)864) 을 다하여 전하께서 살펴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일에 현석규가 전하의 지극한 덕을 더럽힌 것이 많습니다. 아아! 세상을 희미하게 하고 나라를 그르치는 간인(奸人)은, 천하에 참으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임금이 지키는 것이 발라서 막기를 심히 엄하게 하기 때문에 손을 움츠리고 기회를 엿보며 감히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사이와 틈을 타서 다투어 나오고 다투어 들어와서 차츰 차츰 젖어들어서 임금으로 하여금 스스로 술책 가운데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는 한 번 나오면 물리칠 수 없고 한 번 들어오면 내칠 수 없어서, 그 화가 장차 더할 수 없는 데에 이르러 남의 나라를 그르친 뒤에야 그칩니다. 자고로 바른 자는 적고 간사한 자는 많은데, 바른 자는 반드시 이기지 못하고 간사한 자는 매양 이깁니다. 사물로 말하다면 자(紫)가 주(朱)를 어지럽히는 것은 오색(五色)의 사(邪)가 정(正)을 이기는 것이요, 정성(鄭聲)865) 이 아악(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은 오음(五音)의 사가 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현저하게는 사물(事物)의 즈음에서, 은미하게는 염려의 사이에서 사정이 어지럽고 시비가 뒤바뀌니 이것은 고금의 임금들이 일에 임하여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송(宋)나라의 왕안석(王安石)은 조야(朝野)가 그 재주에 탄복하였고 참정(參政)을 제수하자 모두 사람을 얻었다 하였는데, 홀로 여헌가(呂獻可)866) 만이 말하기를 ‘천하의 창생(蒼生)을 그르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이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만일 왕안석이 오래 조정[廟堂]에 있으면 안정될 도리가 없다.’ 하고, 그 탄핵하는 글에 말하기를, ‘밖으로 박야(朴野)한 것을 보이고 마음에는 교사(狡詐)한 것을 감추었다.’ 하였습니다. 금세에서 보면, 왕안석이 참정이 되는 것은 조야가 바란 것이고 임금의 뜻이 향한 것인데 박야한 바탕은 있고 현저히 교사한 자취는 없었으므로 여헌가도 홀로 이런 말을 하여 입밖에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나, 과감히 항언하고 소매에 글을 넣어 가지고 탄핵하였으니, 그 때문에 사마 군실(司馬君實)867) 이 여헌가의 선견(先見)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석규는 음험하고 바르지 못한 자취가 처음으로 나타나자, 한때의 공의(公議)가 모두 불가하다 하는데, 홀로 전하께서 그 불가한 것을 살피지 못하시니, 이것은 현석규가 참으로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알지 못하거니와, 지금 우리 성조(聖朝)의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가 도리어 송나라 조정의 한 여헌가(呂獻可)만 못합니까? 또 당(唐)나라-송(宋)나라 임금은 보통 재주의 중등 가는 임금이니, 비록 노기-왕안석이 간사한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지마는, 어찌하여 전하께서 요(堯)-순(舜)의 성스러움과 일월(日月)의 밝음으로 현석규의 간사에 유의하여 비추어 밝히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도리어 높이고 중하게 하여 공의의 분격을 더하십니까? 전하께서 살피시기를 앞드려 바랍니다. 고금의 군신(君臣) 사이에 작은 화가 마침내 큰 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비록 이 사람이 그르고 그 일이 그릇된 것을 알더라도 만일 임금의 뜻이 그르게 여기지 않고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면, 신이 비록 말을 하더라도 임금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신이 비록 말하더라도, 성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면 신의 말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말해 보았댔자 신에게 이익될 것이 없고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여, 마음으로는 비록 그런 것을 알기는 하나 입으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의 뜻에도, ‘이 사람이 비록 조금 그르고 이 일이 비록 조금 그릇되었으나 이미 허락하였고 이미 시행하였으니, 대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여, 비록 말하는 자가 있어도 예사로 듣고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군신 사이가 각각 이쪽 저쪽이 되어, 그 화가 장차 아래에서는 말하는 자가 없고 위에서는 듣는 자가 없어 나라가 따라서 그르게 될 것이니, 또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소인이 임금 앞에서 겉으로는 곧은 행실을 하고 속으로는 그 술책을 시험하되, 임금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리석고 곧으며 이 사람이 바른 것을 지키고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을 다한다.’ 하여, 날로 의지하고 맡기어 은총이 이미 맺어지고 굳어지면, 조정에서 비록 모두 이 사람이 참 소인인 것을 알아서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임금이 반드시 뜻에 거슬려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한 아무 일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고, 행하는 아무 일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꺼리는 것이니, 이 사람은 믿을만 하고 여러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하여, 많은 말들이 다 귀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인의 화는 이미 천하에 퍼질 것이니, 그 화가 또한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현석규는 소인이고 재주가 있는 자입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재주가 넉넉하고 덕이 부족한 자가 소인이다.’ 하였습니다. 소위 재주라는 것은 문장(文章)과 정사(政事)의 총명(聰明)과 구변(口辨)이 모두 재주입니다. 그러므로 소인이 재주가 있는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두렵지 않습니까?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여러 승지(承旨)를 체임시키시던 날에 하늘이 홀연히 뇌성벽력을 하였는데, 가을 우리는 소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도 도리어 천동한 것은 실로 음양(陰陽)이 크게 어그러진 것이니, 반드시 인사(人事)가 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현석규가 소인으로서 홀로 그 작위를 보존하여 전하의 좌우에 있다는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하의 덕으로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천변을 불렀겠습니까? 하늘이 전하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대저 제왕의 허물은 일식(日食)·월식(月食)과 같아서 사람이 모두 보아서 엄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일월의 박식(薄蝕)을 돌이키어 대명(大明)을 중천에 회복하여, 현석규의 죄를 조정에서 밝게 다스려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쾌하게 하고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그리한다면, 무엇이 대명에 손(損)이 되며, 무엇이 성덕에 손(損)이 되겠습니까? 신이 어찌 입을 다물고 스스로 보전하고 전하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모조리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아버지가 죽던 날에 말하기를, '네가 국은(國恩)을 입은 것이 천지 같이 끝이 없으니, 마땅히 충절을 다하고 스스로 보전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였 습니다. 세상에서 신을 나무라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제가 맡은 직사가 아닌데 왜 저러느냐?' 하겠으나, 신이 감히 스스로 횡의(橫議)를 피하여 전하께 충절을 다하지 않고, 또 지하에 있는 아비로 하여금 눈을 감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이 미천하다 하여 그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소서."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니, 김언신(金彦辛)을 명소(命召)하고, 곧 유자광(柳子光)의 상소를 정승(政丞)들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상소 가운데의 말이 어찌하여 김언신과 같은가? 유자광에게 물으라."

하자, 유자광이 대답하기를,

"신이 현석규가 노기(盧杞)·왕안석(王安石)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근일에 행사한 형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조식(趙執)의 일을 한한이 홍귀달에게 청하고, 홍귀달이 따라서 아뢰었다.' 하였 으니, 그렇다면 홍귀달의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죽을 죄를 갑자기 동렬(同列)에서 가하였는데 일이 끝내 실 상이 없었으니, 이것이 그 형적이 노기·왕안석과 같은 것입니다. 또 요전에 대사례(大射禮)868) 를 행하던 날에 의빈(儀賓) 홍상(洪常)이 현석규에게 청하기를, '내가 모시고 쏘자고 하는데, 왜 내 이름을 단자(單子)에 쓰지 않았 는가?'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정원(政院)에서 써서 아뢰었는데 주상께서 낙점(落點)869) 하시지 않았다.' 하였 으니,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나 또한 간사한 것의 일단(一端)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김언신에게 전교하기를,

"노기·왕안석은 자기를 그르게 여기는 자를 가만히 헐뜯어서 멀리하고 배척하였으니 소인의 형적이 나타났지마 는, 현석규가 한 일도 이와 같으냐? 그대가 나에게 말하기를 '만일 망령된 말을 하여 임금을 속였다면 마땅히 극 형을 받겠다.' 하였는데, 지금 정승들이 모두 현석규는 소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대가 극형을 면하겠느냐? 그대가 나더러 소인을 믿어 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대가 항상 나를 진(秦)나라 이세(二世)에 견주었느냐? 과연 이와 같다면, 그대가 마땅히 멀리 숨어야 옳을 것인데, 어째서 이런 때에 벼슬하느냐? 그대가 나를 어떤 종류의 임금 에 견주느냐?"

하자, 김언신이 현석규의 죄를 꼽기를 경연에서 아뢴 것과 같이 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현석규를 음험하고 간사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두어 가지 일을 보니 더욱 그 음험함을 알겠습니 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문득 노기·왕안석에 견주는 것이 옳느냐? 조종(祖宗)께서 여러 대를 대통(大統)을 전하시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소인을 써서 나라를 그르친다면, 후세에 어떻다 하겠는가? 나는 참으로 덕종(德宗)·신종(神宗)이 임금 노릇한 것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유자광의 상소가 비록 너무 지나치나 대신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납하지마는, 김언신은 내가 죄주고자 하는데, 경들의 뜻에 어떠한가? 또 현석규가 홍상에게 대답한 말은 친구 간에 희롱한 일이다."

하므로, 유자광이 대답하기를,

"옛말에, '친구에게 믿어지지 못하면 윗사람에게서 신임을 얻지 못한다.' 하였으니, 친구에게 믿어지지 못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또 현석규가 종실(宗室)의 사위로서 종실 정양군(定陽君)의 기생을 간음하고 집을 지어 주고 매양 그 집에서 잤으니, 이것이 어찌 근시(近侍)하는 자의 할 일입니까? 또, 소인이 없는 세상은 없으니, 어찌 말세에만 생기겠습니까? 요(堯)·순(舜)의 세상에도 사흉(四凶)이 있었습니까? 신이 현석규에게 어찌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숨김 없이 다 진달할 뿐입니다. 신이 실로 미치고 망령됩니다."

하였다. 정인지(鄭麟趾) 등이 말하기를,

"김언신의 말이 너무 과하기는 하나, 간관의 말이 간절하지 않으면 임금의 귀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성상께서 재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말을 서로 전할 때에 반드시 보태지고 빠지는 것이 있을 것이니, 내가 친히 들겠다."

하고,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정인지·심회(沈澹)·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강희맹(姜希孟)·신정(申澣)·최한정(崔漢禎) 및 유자광(柳子光)·김언신(金彦辛) 등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정인지 등에게 이르기를,

"자고로 임금으로서 누가 소인을 버리고자 하지 않을까마는, 소인인 줄을 알면서 버리지 않는 자가 많다. 나도 현석규가 소인인 것을 알면서 썼는데, 정승과 전조(銓曹)에서 어째서 말하지 않았는가?"

하므로,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신은 현석규가 흉악한 마음을 포장(包藏)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옳은 정사를, 내가 소인을 쓰기 때문에 무너뜨리는데, 지금 대신이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현석규가 만일 소인이 아니라면 무령(武靈)이(871) 과 김언신이 어째서 소인이라고 말하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면대하여 따르고 물러가서 뒷말을 하지 말라.' 하였으니, 경 등은 다 말하라. 현석규가 만일 참으로 소인이면 파직하여 보내겠다."

하였다. 정인지·김국광이 말하기를,

"신 등은 그 사람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강희맹이 말하기를,

"현석규의 심술이 은미한 것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신 등이 만일 참으로 소인인 것을 알면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또 현석규가 오래 형방(刑房)을 맡았으니, 행사한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규가 만일 참으로 소인이라면, 내가 덕종(德宗)·신종(神宗)이 소인을 쓴 잘못과 같다는 비평을 달게 받겠으나, 만일 소인이 아닌데 김언신이 소인이라고 말하였다면, 이것은 먼저 스스로 임금을 속인 것이니, 어찌 직책에 있을 수 있는가?"

하였다. 유자광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우직하여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한(韓僴)은 외척인 신하인데, 어찌 임금을 속이고 홍귀달(洪貴達)에게 청축하였겠습니까? 한한이 비록 청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네 승지(承旨)가 어찌 모두 청축을 듣겠습니까? 고금에 소인이 없는 세상은 없으니, 임금이 쓰고 버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저 소인은 행사와 언어가 충직(忠直)한 것 같아서 그 소인인 것을 임금이 알지 못합니다. 현석규의 이치(吏治)는 참으로 일컬을 만한 것이 있으나, 근일의 일로 보면 그 간사한 것이 더 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경이 극진히 말하고 숨기지 않은 것을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현석규를 소인이라 하는 것은 그르다."

하므로, 유자광이 말하기를,

"신이 현석규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광직(狂直)한 탓으로 가슴 속에 품은 바를 감히 함묵(含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석규는 서원군(瑞原君)의 사위인데 정양군(定陽君)의 기생을 간음하였습니다. 예전의 어진 사람은 성의(誠意)·정심(正心)으로부터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석규가 집에서 행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나라에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극기(李克基) 같은 사람은 참으로 정대한 사람인데, 현석규는 육경(六卿)이 되고 이극기는 감사(監司)가 되었으니, 이것이 신 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령군은 공신이고 대신이기 때문에 비록 과한 말이 있어도 용서하여야 하겠지마는, 김언신은 내가 반드시 국문 하겠다."

하니, 김언신이 말하기를,

"신이 죄를 당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으나, 지금 현석규를 쓰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과 김질(金礪)은 집에 있었으므로, 주서(注書) 김심(金諶)에게 명하여 가서 묻게 하니, 정창손과 김질이 의논하기를,

"현석규는 후진(後進)이어서 행사의 자취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심술(心術)의 은미한 것이겠습니까? 왕 안석(王安石)·노기(盧杞)가 합하여 하나가 된 것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현석규의 행사의 자취와 심술의 은미한 것을 안다면, 신 등이 어찌 감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 하였는데, 지금 김언신이 전하를 대하여 현석규를 극진히 논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이 광직(狂直)하니, 뇌락(磊落)하여 구속을 받지 않는 선비입니다. 신 등은 기쁘고 경하하는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0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註 864]주요지언(芻蕘之言) : 고루하고 촌스러운 말.

[註 865]정성(鄭聲) : 정(鄭)나라의 음악. 정나라에는 음탕한 음악이 유행하였으므로, 전(轉)하여 음탕한 음악으로 일컬어짐.

[註 866]여헌가(呂獻可) : 여회(呂誨).

[註 867]사마 군실(司馬君實) : 사마광(司馬光).

[註 868]대사례(大射禮) :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석전(釋奠)을 지낸 뒤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 예(禮).

[註 869]낙점(落點) : 임금이 이조나 병조에서 천거한 삼망(三望: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1인에게 점(點)을 찍어 등용하던 일.

[註 870]사흉(四凶) : 요(堯)임금 때의 네 명의 악인(惡人). 곧 공공(共工)·환두(驩兜)·삼묘(三苗)·곤(鯀).

[註 871]무령(武靈) : 유자광.

○武靈君 柳子光上疏曰:

臣聞事君無隱, 有懷必達, 臣之事君, 猶子之事父, 豈有間哉? 若臣事君不忠, 子事父不孝, 天理滅而人道亂矣。 臣起自微賤, 位崇極品, 顧無兄弟族親之勢, 單獨一身, 孤世自立, 遇事果言, 所恃者特殿下日月之明, 而所期者欲不負一心之誠耳。 伏念臣向論玄碩圭與任士洪、孫舜孝、韓僩、洪貴達等事情是非賞罰異同, 退而待罪, 不意殿下恕臣狂僭, 天地生成之恩, 猶復蘇於已灰之骨, 不勝幸甚幸甚。 然碩圭之超遷, 又出於國人之驚駭。 昔唐 德宗謂李泌曰: "人言盧杞奸邪, 而朕殊不覺其然。" 泌對曰: "此乃杞之所以爲奸邪也。" 臣恐碩圭正有盧杞之奸, 而殿下偶未及察之耳。 臣聞諸葛孔明言於後主曰: "宮中府中俱爲一體, 陟罰臧否, 不宜異同。 若有作奸犯科, 宜付有司, 論其刑賞, 以昭陛下平明之治。" 又曰: "親賢臣, 遠小人, 先漢所以興隆也, 親小人, 遠賢臣, 後漢所以傾危也。" 孔明當出師之日, 必料敵制勝之不暇, 宜以行陣甲冑之事言之, 猶汲汲於平明刑賞親賢臣遠小人爲言, 其心必曰: "臣雖能於料敵制勝, 主若忽於刑賞, 又忽於君子小人之進退也, 則蜀先不蜀矣, 何用於伐魏而能一天下, 以奉先帝之遺意乎?" 其慮微而忠愛君上之誠凜然, 至今千載, 使人起立。 臣愚伏念殿下必以 '貴達之啓事非也, 則碩圭雖有憤怒不禮, 未爲過也, 李克基以下五承旨一議, 而碩圭獨不可議, 碩圭是而五承旨亦非也。' 臣愚以爲人各有執, 貴達若不聽韓僩請囑, 但執所見論啓, 則貴達之啓, 實無情之舉耳, 碩圭啓曰: "宋益孫請於臣, 貴達亦必聽韓僩之請囑也。" 又啓曰: "盧公弼之弟公裕, 乃益孫之壻, 公弼爲是有言而中臣也。" 又無根之言而啓之曰: "是任士洪之陰嗾也。" 臣愚以爲父爲子隱, 子爲父隱, 天理也人情也。 益孫果瑚之父也, 則雖以千萬賂碩圭亦可也, 父不爲子言, 豺虎耳。 益孫雖有言, 如碩圭不聽而已可也。 且公弼果爲弟之婦家事, 欲中碩圭乎? 未知士洪素有何嫌, 至於陰嗾乎? 此皆碩圭對諫官互相以啓之言也。 若貴達聽韓僩之請而乘間以啓, 欺罔聖聰, 欲誣上行私, 則貴達、韓僩, 其罪可誅, 不可赦也。 若士洪、公弼之言又果出於陰嗾也, 則罪雖不至於死, 亦大矣。 不然, 碩圭當以其罪反坐, 而又不可赦之也。 碩圭隨因事機, 詭爲險言, 狡詐可知矣。 臣之此論, 若

一毫未盡而過於事情，伏惟殿下付臣有司，治臣妄言之罪。臣之所以至於此事不能無言，反覆爲殿下言之不已者，外議皆以碩圭爲非，而獨殿下未及省悟。故欲效芻蕘之言，冀望殿下之察悟耳。近日碩圭之累殿下至德多矣。噫！末世誤國之奸，天下信未嘗無其人也，顧人主所守者正，防之甚嚴，故縮手伺便而未敢發耳。少有其便，則乘間抵隙，爭進競入，浸淫漸漬，使人主不自知其陷於術中。如此者一進則不可退，一入則不可出，其禍將至無所不克，而至於誤人之國而後乃已。自古正者少而邪者多，正者未必勝而邪者每勝。以物言之，則紫之亂朱，五色之邪勝正也，鄭之亂雅，五音之邪勝正也。發而事物之際，隱而念慮之間，邪正紛紜，是非顛倒，此古今帝王之臨事不可不深察者也。宋王安石則朝野服其才，及拜參政，皆以爲得人，獨呂獻可以爲‘誤天下者必此人也’乃曰：“若王安石久在廟堂，無安靜之理。”其彈文曰：“外示朴野，中藏狡詐。”以今觀之，安石之參政，朝野之所望，上意之所向，而有朴野之資，顯無狡詐之迹，獻可固難獨爲此言出於口也，乃果於抗言，袖文以彈，所以司馬君實亦不及獻可之先見也。今碩圭則陰險不正之迹始著，一時公議皆以爲不可，獨殿下不察其不可焉，此碩圭之所以真奸邪也。臣愚未知今我聖朝在廷群臣，反不如宋朝之一獻可乎？且唐、宋之君常才中主，雖不識盧杞、安石之奸邪，無足怪也，奈何殿下以堯、舜之聖，日月之明，不留意照明於碩圭之奸邪乎？奈何反崇重之，以增公議之憤激乎？伏惟殿下垂察焉。古今君臣之間有微禍而終爲大禍在焉。朝廷雖知此人之非此事之誤，若上意不非不誤，則乃曰臣雖有言，上意已定，臣言不能入矣，言之於臣無利，於事無益，心雖知非，口則無言，上意亦曰：“此人雖差非，此事雖少誤，業已許之，業已施行，何關大體？”雖有言之者，例聞而過聽。君臣之間一彼一此，而其禍將至於下無有言上無所聞，國隨以非，不亦寒心乎？又有甚於此者，小人之在君上之前，陽爲直行，陰試其術，而君上以爲：“此人愚直，此人守正，此人盡忠於我”，日以爲倚任，恩寵既結既固，則朝廷雖皆知此人(人)之真小人而有言之者，君上必逆意曰：“此人平居所言某事，必衆人之所惡，所行某事，必衆人之所忌，此人可信而衆人之言不可信也。”千言萬語不能入耳，而小人之禍已滋蔓於天下矣，其禍不亦慘乎？臣愚以爲碩圭小人而才者也。先儒曰：“才有餘而德不足者小人。”所謂才者，文章也，政事聰明也，口辨也，皆才也。故曰小人而才者，虎而翼也，可不懼哉？臣愚伏見殿下命遞諸承旨之日，天忽雷霆，秋雷宜收聲而反震驚焉，實陰陽之大乖而必人事之有應。豈非碩圭以其小人獨保其位，而在殿下左右之戒乎？不然，以殿下之德而有何失，致此天變也？天之仁愛殿下亦明矣。夫帝王之過，如日月之食，人皆見之，而不可掩之也。伏願殿下回日月之蝕，復大明於中天，明治碩圭之罪於朝，以快人望，以答天戒，幸甚幸甚。然則何損於大明，何損於聖德？臣安能含默自保，不爲殿下盡陳己意？臣之父臨死之日，語曰：“汝蒙國恩，天地罔極，當盡忠盡節，毋爲自保之計，吾於地下可以瞑目矣。”世之咎臣者，必曰：“彼非職事，胡爲如是？”臣敢自避橫議，不盡忠盡節於殿下，而又使地下之父不能瞑目乎？此臣之所以不能含默自己者也。伏惟殿下勿以臣微而忽其言也。

疏上，命召金彥辛，乃以子光疏示政丞等，曰：“疏中語，何與彥辛同也？其問于子光。”子光對曰：“臣以碩圭有似盧杞、安石者，以近日行事之迹觀之而知其然也。碩圭云：‘趙軾事，韓侂請於洪貴達，貴達從而啓之。’然則貴達之罪當死。以死罪遽加於同列，事終無實，此其迹似盧杞、安石也。且前此行大射禮之日，儀賓洪常請碩圭曰：‘吾欲侍射，何不書吾名于單子乎？’碩圭曰：‘政院書啓，而上不落點。’此雖小事，亦見奸邪之一端也。”傳于彥辛曰：“盧杞、王安石則陰毀其非己者而遠斥之，小人之迹見著矣，碩圭所爲亦如是乎？爾言我‘若妄語而欺君，則當受極刑。’今政丞等皆曰，碩圭非小人，汝其免極刑乎？爾以我爲信用小人，然則爾常以我比秦二世乎？果如此，則爾當高蹈可也，何仕於此時乎？爾比我於何等主乎？”彥辛數碩圭之罪，如經筵所啓，且曰：“臣嘗以碩圭爲陰險奸邪，觀此數事，尤知其陰險矣。”傳曰：“以此小事，遽比於盧杞、安石可乎？祖宗累世垂統，一朝我用小人而誤國，則後世以爲何如？我誠不及德宗、神宗之爲君矣。且柳子光之疏雖大過，以大臣故優容之，彥辛則予欲罪之，於卿等意何如？且碩圭答洪常之言，此朋友

間戲事耳。”子光對曰：“古云：‘不信乎朋友，不獲乎上。’未有不信於友而忠於君者也。且碩圭以宗室之壻，淫宗室定陽之妓，爲構其屋，每宿其家，此豈近侍者之所當爲乎？且小人無世無之，豈必生於衰世？堯、舜之世亦有四凶。臣於碩圭豈有情乎？但胸中所懷，悉陳無隱耳。臣實狂妄。”麟趾等曰：“彥辛之語太過，然諫官之言不切，則不足以動人主之聽。請上裁。”傳曰：“言語相傳時，必有加減，予當親聽。”乃御宣政殿，引見麟趾、沈澹、子雲、國光、希孟、申靜、漢禎及子光、彥辛等。上謂麟趾等曰：“自古人君孰不欲去小人，然知小人而不去者多矣。予亦知碩圭之爲小人而用之，政丞與銓曹何不言歟？”麟趾對曰：“臣未知碩圭之包藏凶惡也。”上曰：“先王善政，以予用小人而毀之，今大臣不言可乎？碩圭若非小人，則武靈、彥辛何以言小人乎？古人云：‘爾無面從退有後言’，卿等盡言之。碩圭若真小人，則當罷遣之。”麟趾、國光曰：“臣等未知其人之小人也。”希孟曰：“碩圭心術之微，未能灼知。臣等若知真小人，則敢不啓之也。且碩圭久任刑房，行事之跡可見矣。”上曰：“碩圭若真小人，則予甘受德宗、神宗用小人之失，若非小人，而彥辛謂之小人，則是先自欺君也，豈宜在職乎？”子光進曰：“臣以愚直，知無不言。韓侂，外戚之臣也，豈欺君而請囑於貴達乎？韓侂雖曰請囑，其餘四承旨豈皆聽請囑哉？古今小人無世無之，在人君用舍而已。夫小人行事言語似乎忠直，人主未知其爲小人也。若碩圭之吏治，固有可稱。然以近日之事觀之，其爲奸譎莫甚。”上曰：“向者卿亦極言不諱，予甚嘉之。然而謂碩圭爲小人非也。”子光曰：“臣於碩圭有何情哉？只以狂直，胸中所懷不敢含默耳。碩圭，瑞原君之壻也，淫於定陽君之妓。古之賢人，自誠意正心，以至於治國平天下，今碩圭行於家者如此，則其行於國可知矣。是豈正大之人乎？若李克基，真正大之人也，碩圭爲六卿，克基爲監司，此臣等之未解也。”上曰：“武靈君功臣且大臣，故雖有過言，固當優容，彥辛則予必鞫之。”彥辛曰：“臣之被罪不足恤，今用碩圭，則恐有後悔矣。”鄭昌孫、金礪在家，命注書金諶往問之，昌孫、礪議：“玄碩圭後進也，行事之迹所不詳知，況心術之微乎？王安石、盧杞合而爲一者，亦不可知。若知碩圭心術之微行事之迹，臣等安敢不以實對？古人云：‘主明，臣直’，今彥辛對殿下極論碩圭，略不畏怯，其言狂直，磊落不羈之士也。臣等不勝欣賀。”

不與碩圭同事未知其然也 傳曰金彥辛指碩圭為小人是
先自欺君也若碩圭真如盧杞安石則是二人皆誤國者也今
碩圭之進退亦係國之治亂安危卿等知而不言可乎我若不
知而用小入則我不辭德宗神宗之失也卿等勿憚臺諫勿庇
碩圭其盡言之麟趾曰小人雖包藏禍心聖明之時則不得肆
矣沈滄尹子雲曰碩圭之為小人臣實不知國光曰碩圭誠非
小人也平時不畏強禦好言人之過失真鯁直人也 傳于希
孟等曰碩圭欲授刑曹判書問可否卿等曰判書正二品也大
司憲從二品也正從異等恐大過矣而不言小人若碩圭真如
盧杞安石則卿等何不於其時言之希孟對曰臣等若知碩圭
之真小人則當於其時駁之豈但進稟資級高下乎○武靈君柳
子央上疏曰臣聞事君無隱有懷必達臣之事君猶子之事父豈有
間哉若臣事君不忠子事父不孝天理滅而人道亂矣臣起自
微賤位崇極品顧無兄弟族親之勢單獨一身孤世自立遇事果
言忤恃者特 殿下日月之明必察期者欲不負一心之誠耳伏

念臣向論玄碩圭與任士洪孫舜孝韓僴洪貴達等事情是非
實罰異同退而待罪不意 殿下怒臣狂僭天地生成之恩猶
復蘇於已灰之骨不勝幸甚幸甚然碩圭之趨遷又出於國人之
驚駭昔唐德宗謂李泌曰人言盧杞奸邪而朕殊不覺其然泌
對曰此乃杞之所以為奸邪也臣恐碩圭正有盧杞之奸而
殿下偶未及察之耳臣聞諸葛孔明言於後主曰宮中府中俱
為一體陟罰臧否不宜異同若有作奸犯科宜付有司論其刑賞
以昭陛下平明之治又曰親賢臣遠小人先漢所以興隆也親
小人遠賢臣後漢所以傾危也孔明當出師之日必料敵制勝
之不暇宜以行陳甲冑之事言之猶汲汲於平明刑賞親賢臣
遠小人為言其心必曰臣雖能於料敵制勝主若忽於刑賞又
忽於君子小人之進退也則蜀先不蜀矣何用於伐魏而能一
天下以奉先帝之遺意乎其慮微而忠愛君上之誠凜然至今千
載使人起立臣愚伏念 殿下必以貴達之啓事非也則碩圭
雖有憤怒不禮未為過也 李克基以下五奉旨一議而碩圭獨

성종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1일 임술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이경동이 의금부의 국안을 가지고
김언신·현석규·유자광·임사홍의 일을 아뢰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全)이 의금부의 국안(鞫案)을 가지고 아뢰기를,

"유자광의 공사(供辭)에 이르기를, '상소할 때에 김언신과 같이 의논하지 않았고, 그 뒤에 김언신을 보고 서로 이
르기를, 「나의 상소가 자네가 말한 것과 같으니, 사람들이 반드시 같이 의논했다고 할 것이다.」 하였고, 애초에
임사홍의 음주(陰嘯)404) 를 들은 것은 아니다. 내가 임사홍·한한(韓僴)과 더불어 홍귀달(洪貴達)의 집에 가서 들
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언신의 공사에는, '내가 정랑이 되었을 때에 임사홍과 서로 만났는데, 임사홍이
현석규(玄碩圭)의 일을 말하기에, 내가 듣고 통분(痛憤)함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현석규가〉 지평(持平)에 제수되
었다는 것을 듣고, 곧 죽을 힘을 다하여 반대하려고 하여 참의(參議) 손순효(孫舜孝)에게 물으니, 손순효는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여러번 임사홍과 서로 만났으나, 진실로 음주(陰嘯)를 듣지는 않았다.'고 하였습
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광과 김언신이 그때에 현석규를 소인(小人)이라고 극언(極言)하였으니, 김언신이 반드시 임사홍의 술책에 빠
져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

"그때에 현석규가 두 자금(資級)을 뛰어올랐으니, 김언신만 탄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 생각으로도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전하의 밝으심이 아니면 현석규와 임사홍의 간사하고 바른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까? 신은 본래 임사홍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였지만, 신이 중시(重試)405) 에 합격하고 임사홍이 초시(初試)에 합격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임사홍을> 교만[驕抗]하다고 하였습니다. 임사홍은 재상의 아들이므로 소년(少年)으로 과거에 올라, 신이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자 임사홍은 도승지(都承旨)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있는 지 겨우 20여 일이 되었는데, 행동이 거만하고, 동료(同僚)를 대하는 것도 이와 같았으므로, 신이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됨을 알았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로(發露)되었으면 마땅히 엄히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신(內臣)406) 이 은근히 대간(臺諫)을 부추기고, 대간이 탄핵하여 안팎으로 서로 호응하면, 나라 일이 장차 날로 그릇될 것이니, 풍습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은 탄로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미 드러났으니, 내가 장차 엄하게 징계하겠다. 표연말(表沿沫)은 인견(引見)하던 날에 말하지 아니하고, 파직(罷職)하던 날에 심원(深源)에게 말하였으니, 매우 간사하다. 그 정유(情由)를 국문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경동(李瓊全)은 현석규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전하의 밝으심이 아니면 어찌 현석규와 임사홍의 간사하고 바른 것을 알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임금의 뜻을 맞추어서 아부하여 용납되기를 구하는 자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9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98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정론-정론(政論) / 인물(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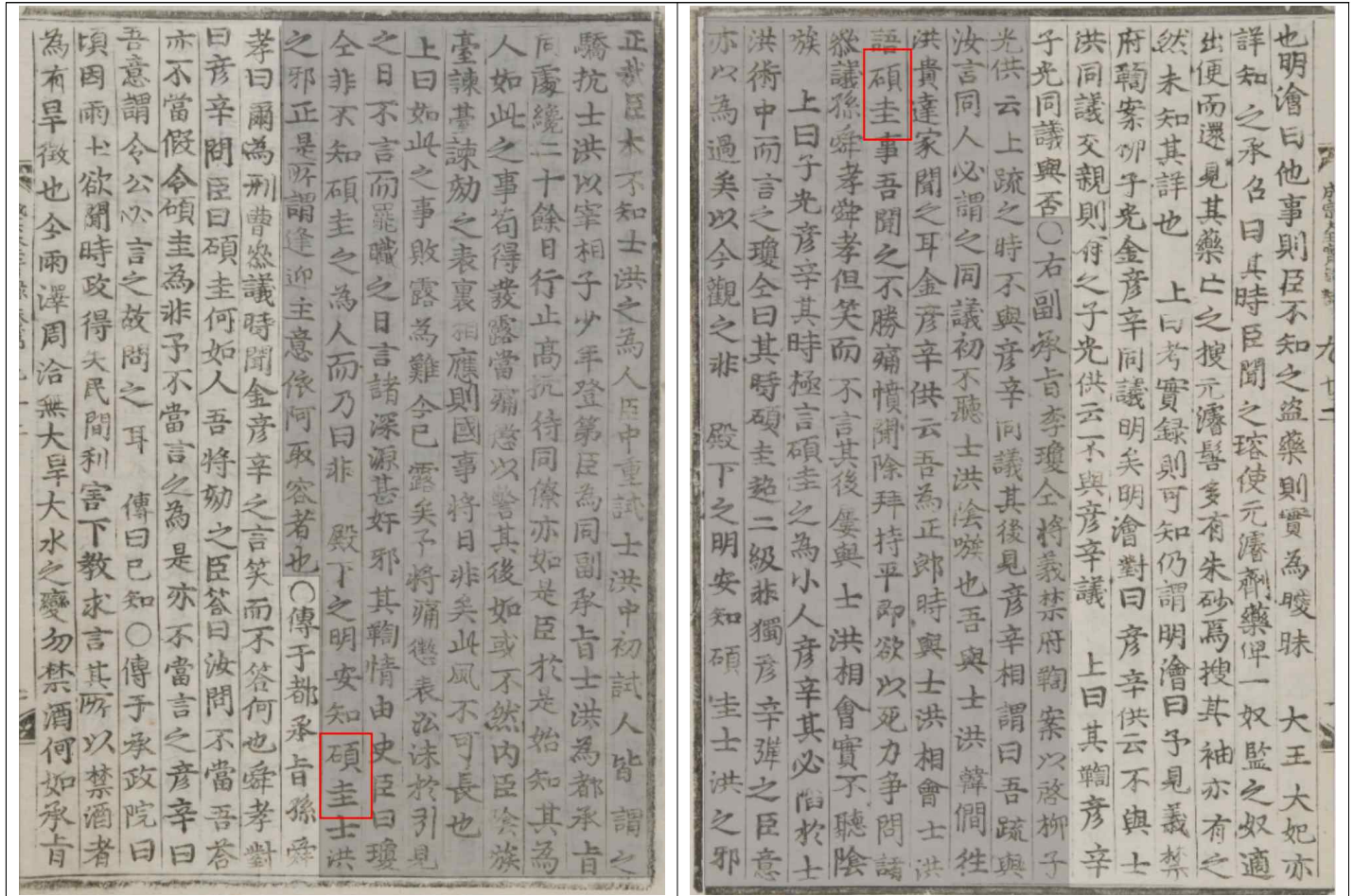
[註 404]음주(陰嗾) : 은근히 사주함.

[註 405]중시(重試) : 회시(會試).

[註 406]내신(內臣) : 승지를 가리킴.

○右副承旨李瓊全將義禁府鞫案以啓: "柳子光供云: '上疏之時, 不與彥辛同議, 其後見彥辛相謂曰: 「吾疏與汝言同, 人必謂之同議」, 初不聽士洪陰嗾也。 吾與士洪、韓僴往洪貴達家聞之耳。' 金彥辛供云: '吾爲正郎時, 與士洪相會, 士洪語碩圭事, 吾聞之不勝痛憤, 聞除拜持平, 卽欲以死力爭, 問諸參議孫舜孝, 舜孝但笑而不言。 其後屢與士洪相會, 實不聽陰嗾。'" 上曰: "子光、彥辛, 其時極言碩圭之爲小人, 彥辛其必陷於士洪術中而言之。" 瓊全曰: "其時碩圭超二級, 非獨彥辛彈之, 臣意亦以爲過矣。 以今觀之, 非殿下之明, 安知碩圭、士洪之邪正哉? 臣本不知士洪之爲人, 臣中重試, 士洪中初試, 人皆謂之驕抗。 士洪以宰相子, 少年登第, 臣爲同副承旨, 士洪爲都承旨, 同處纔二十餘日, 行止高抗, 待同僚亦如是, 臣於是始知其爲人。 如此之事, 苟得發露, 當痛懲以警其後。 如或不然, 內臣陰嗾臺諫, 臺諫劾之, 表裏相應, 則國事將日非矣。 此風不可長也。" 上曰: "如此之事, 敗露爲難, 今已露矣, 予將痛懲。 表沿沫於引見之日不言, 而罷職之日言諸深源, 甚奸邪。 其鞫情由。"

【史臣曰: "瓊全非不知碩圭之爲人, 而乃曰: '非殿下之明, 安知碩圭・士洪之邪正?' 是所謂逢迎主意, 依阿取容者也。"】



[지방관] 조선전기 지방관 평안도(平安道)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1478[무술(戊戌)]	
[인물요약]	[관인정보]
	·관직명칭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관직등급 관찰사(觀察使) ·관직이칭 기백(箕伯) ·부임년월 1478 [무술(戊戌)] 임(任)
	[도 정보]
	·도명칭 평안도(平安道)
	[비고]
	·비고 임(任)
	[출전]
	『형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D604C11DADDCB1430X0
·자(字)	덕장(德璋)
·문무구분	문관
·생년	미상(未詳) (미상)
·졸년	미상(未詳) (미상)
·시대	조선전기
·왕대	성종(成宗)
·본관	창원(昌原)
·활동분야	관료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이조판서(吏曹判書)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D604C11DADDCB1430X0 • 자(字) 덕장(德璋)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졸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전기 • 왕대 성종(成宗) • 본관 창원(昌原) • 활동분야 관료 • 항목 이조판서(吏曹判書)	[관인정보] • 제수년월 1487 [정미(丁未)] [품관 정보] • 품관 정2품 [과거 정보] • 과거 세종(世宗) 경진별(庚辰別) [출전]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
--	---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D604C11DADDCB1430X0 • 자(字) 덕장(德璋) • 문무구분 문관 • 생년 미상(未詳) (미상) • 졸년 미상(未詳) (미상) • 시대 조선전기 • 왕대 성종(成宗) • 본관 창원(昌原) • 활동분야 관료 • 항목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관력 정보] • 관직 우참찬(右參贊) [출전] 『은대선생안(銀臺先生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9727])
--	--

[관련정보] [사전] 인물 생애 정보 [문과] 세조(世祖) 6년(1460) 경진(庚辰) 별시(別試) 을과1등(乙科一等) 2[榜眼]위(02/20) [지방관] 조선전기 지방관 평안도(平安道)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1478[무술(戊戌)]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이조판서(吏曹判書)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성종실록 189권, 성종 17년 3월 15일 경신 1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대간이 임사홍·강석경의 일을 힘써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곽은(郭垹)·헌납(獻納) 이승건(李承健)이 아뢰기를, "임사홍(任士洪)의 무리는 서로 봉당을 맺어 조정을 어지럽혔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 직첩(職牒)을 주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임사홍은 다만 현석규(玄碩圭)를 배척하였을 뿐입니다. 죄가 조정(朝政)을 어지럽히는 데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

직첩을 줄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간(臺諫)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옳으나, 내가 임사홍을 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직첩을 주었을 뿐이다. 어찌 나라를 그르치기에 이르겠는가?"

하였다. 곽은 등이 아뢰기를,

"예전에 왕안석(王安石)이 신종(神宗)에게 대답하기를, '천변(天變)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인데,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제 임사홍은 흠비를 작은 재변이라 하여 근심할 것 없다고 하였으니, 왕안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소인(小人) 가운데서도 심한 자입니다. 예전부터 임금으로서 소인을 알되 떠나게 하지 않고 떠나게 하되 멀리 하지 않아서 난망(亂亡)에 이른 이가 많았습니다. 성상께서 임사홍의 간사를 환히 아시나 떠나게 하되 멀리하지 않고 직첩을 돌려주셨으니, 신들은 나라를 그르칠 조짐이 오늘에 싹들까 염려합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김흔(金訢)이 아뢰기를,

"옛말에 가까이 모시는 복종(僕從)이 모두 바른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내승(內乘)은 가까이 모시는 직임이요 조정(朝政)의 중한 선임인데 강석경(姜碩卿)은 천한 노예로서 이 벼슬에 제수(除授)되었으니, 사사로이 가까운 자에게 미친 것입니다. 또 유종생(劉從生)은 한두 경상(卿相)을 혈뜯었을지라도 종사(宗社)에 관계되지는 않았는데 은유(恩宥)를 입지 못하였고, 임사홍은 조정(朝政)을 어지럽혀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데도 도리어 직첩을 돌려주었으니, 신은 아마도 사령(赦令)이 미덥지 않고 용법(用法)이 전도(顛倒)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석경이 어찌 내승이 될 수 없겠는가? 사람을 등용할 때에 집안만을 논하고 심술(心術)의 사정(邪正)을 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다. 심술이 바르다면 어찌 집안이 천하다 하여 쓰지 않겠는가?"

하였다. 김흔이 아뢰기를,

"강석경이 천한 것은 틀림없으나, 심술이 바르다는 것은 또한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석경의 용심(用心)이 바르지 않은 줄 네가 어찌 아는가? 또 호조(戶曹)의 당상(堂上)이 품(稟)하고서 저자를 옮겼으나, 유종생이 사사로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대신을 혈뜯어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으니, 이는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데도 용서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김흔이 아뢰기를,

"그렇게 논한다면 어느 죄인들 국가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처음에 국문(鞫問)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미 죄인을 알아냈는데 또 용서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김흔이 아뢰기를,

"유종생(劉從生)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침 사령(赦令)을 반포하였으므로 용서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유종생이 죽고 사는 것은 국가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문(赦文)에는 이르기를, '일이 국가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모두 용서한다.' 하였는데, 유종생의 죄는 국가에 관계되는 것으로 적히지 않았으나 홀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임사홍은 죄가 국가에 관계되는데도 특별히 직첩을 돌려주었으므로, 사문과 서로 어그러지니, 아마도 백성에게 믿음을 잃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해서 하였다."

하였다. 곽은(郭垠) 등이 다시 임사홍·강석경의 일을 힘써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임사홍(任士洪)이 대간(臺諫)을 시켜 현석규(玄碩圭)를 공격할 때에, 조정(朝廷)에서는 다들 임사홍이 음험(陰險)한 줄은 알았으나, 현석규의 심술(心術)은 몰랐다. 현석규의 사람됨은 크게 탐욕하되 깨끗한 체하고 크게 속이되 미더운 체하였다. 서울에 있는 가문(家門)에는 사사로이 가 뵈는 일이 없었으나, 시골에서는 몸소 삽을 짚고 마을의 농민과 봇물을 다투었으며, 남의 숨은 부정을 적발하기 좋아하고, 사람을 다치고 물건을 해치기 좋아하고, 자기를 뽐내고 남을 깔보기 좋아하였다. 그가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을 때에, 내시(內侍) 이효지(李孝智)가 휴가를 얻어 본향(本鄉)에 돌아가니, 현석규가 선물을 많이 주고 매우 후하게 대우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는, 마주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주상(主上)을 매우 멀리 떠나 있으나, 하루도 성덕(聖德)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 운다.' 하였다. 이효지가 서울에 돌아와 현석규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성을 극진히 아뢰니, 임금이 현석규를 충성스럽게 여겨 크게 포상(褒獎)하였다. 현석규가 마음쓰는 것이 간사하기가 이와 같았다. 임사홍(任士洪)은 젊어서 급제하여 갑자기 현직(顯職)에 올라 뜻이 교만하고 넘쳐서 봉당(朋黨)을 맺었으니, 이른바 소인(小人)으로서 소인을 친다는 것이었다. 오직 김언신(金彦辛)은 마음을 강정(剛正)하고 충직하게 세웠으나 그 무리에 빠져 종신토록 금고(禁錮)256) 되었으므로, 그 때의 의논이 아까워하였다. 당초에 세조(世祖)가 오장시(五章詩)를 지어 재상(宰相)에게 보이고 이튿날에 오장을 글제로 삼아 선비를 뽑았는데, 임사홍의 아버지 임원준(任元濬)과 노공필(盧公弼)의 아버지 노사신(盧思愼)이 글을 지어 주어서 두 사람이 급제하였으므로, 서로 벗이 되었다. 그 때에 김수온(金守溫)의 아들 김화(金澣)도 그 아버지의 손을 빌어 글을 지어서 급제하였으나, 두 사람은 급제한 뒤에 학문에 힘썼으므로 드디어 문명(文名)이 있었고, 김화는 학문에 뜻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였다고 대우하였고 인품도 가장 낮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18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1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상업-시장(市場)

[註 256]금고(禁錮) :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던 형벌.

○庚(甲)[申] /御經筵。講訖, 掌令郭垠、獻納李承健啓曰: "任士洪之輩交結朋黨, 濁亂朝政, 罪不可恕。請勿給職牒。" 上問左右, 領事(盧士愼)[盧思愼]對曰: "士洪只斥玄碩圭耳, 罪不至於濁亂朝政, 可給職牒也。" 上謂臺諫曰: "爾等之言是矣。然予非用士洪, 只給職牒耳, 何至誤國乎?" 垠等曰: "昔王安石對神宗言: '天變不足畏。' 時人以謂: '人主所畏者天也。人君不畏天, 則何所畏乎?' 今士洪以土雨爲小災不足憂也, 與王安石何異? 此小人之尤者也。自古人主知小人而不去, 去之而不遠, 以致亂亡者多矣。聖上洞知士洪之奸, 去之不遠, 旋給職牒, 臣等恐誤國之漸兆於今日。"

侍講官金訢啓曰："古云：'贊御僕從，無非正人。'內乘，近侍之任，朝廷之重選。姜碩卿以賤隸，得除是爵，及於私昵也。且劉從生雖詆一二卿相，不干宗社，而未蒙恩宥；士洪濁亂朝政，罪關國家，而反還職牒。臣恐赦令不信而用法顛倒也。"上曰："姜碩卿其不可爲內乘歟？用人但論門地，不視心術之邪正，固不可也。心術若正，則豈以門地之賤而不用乎？"訢曰："碩卿之賤則固矣，心術之正，則亦未之聞也。"上曰："碩卿用心不正，爾何知乎？且戶曹堂上取稟移市，從生不勝私憤，醜詆大臣，無所畏忌，是罪係國家，而欲宥之何也？"訢曰："若如是論，則何罪不關國家乎？"上曰："弘文館初欲勿鞫，而既得罪人，又欲宥之何也？"訢曰："非以從生爲無罪也。今適頒赦，謂可宥也。從生死生，無關於國家。但信者，爲國之所重。赦文乃曰：'事關國家綱常外，咸宥除之。'從生罪不書干國家，獨未蒙宥；士洪罪關國家，而特還職牒。與赦文相戾，恐失信於民也。"上曰："予已斟酌爲之。"垠等更力陳士洪、碩卿之事，不聽。

【史臣曰："士洪之喉臺諫攻玄碩圭也，朝廷皆知士洪之陰險，不知碩圭心術。碩圭之爲人，大貪而若廉，大詐而若信。在京家門無私謁，在鄉曲則親自杖鋤，與村農爭畎澮之水。好發奸擿伏，好傷人害物，好誇己輕人。其爲平安道觀察使也，內侍李孝智告假歸本貫，碩圭多贈遺，待之甚厚，以感其心。因對坐泣下曰：'離主上甚遠，無日不思聖德而泣也。'孝智還京，極陳碩圭戀君之誠，上以碩圭爲忠，大加褒獎。碩圭用心之奸詐如此。士洪少登第，驟陞顯秩，志驕意溢，結爲朋黨，所謂以小人攻小人也。惟金彥辛立心剛正忠直，而陷於其黨，禁錮終身，時議惜之。初，世祖製五章詩以示宰相，而翼日以五章爲題取士。士洪之父元濬。盧公弼之父思慎作文而授之，二人登第，相與爲友。時，金守溫之子湲亦借述於其父而登第。然二人則登第後力於學問，故遂有文名；湲則無意於學問，故人以不學待之，且人品尤卑下"]

街之正則亦未之聞也。上曰碩卿用心不正爾何知乎且戶曹堂上取稟移市從生不勝私憤醜詆大臣無所畏忌是罪係國家而欲宥之何也訢曰若如是論則何罪不關國家乎上曰弘文館初欲勿鞫而既得罪人又欲宥之何也訢曰非以從生爲無罪也今適頒赦謂可宥也從生死生無關於國家但信者爲國之所重故文乃曰事關國家綱常外咸宥除之從生罪不書干國家獨未蒙宥士洪罪關國家而特還職牒與赦文相戾恐失信於民也上曰予已斟酌爲之垠等更力陳士洪碩卿之事不聽史臣曰士洪之喉臺諫攻玄碩圭也朝廷皆知士洪之陰險不知碩圭心術碩圭之爲人大貪而若廉大詐而若信在京家門無私謁在鄉曲則親自杖鋤與村農爭畎澮之水好發奸擿伏好傷人害物好誇己輕人其爲平安道觀察使也內侍李孝智告假歸本貫碩圭多贈遺待之甚厚以感其心因對坐泣下曰離主上甚遠無日不思聖德而泣也孝智還京極陳碩圭戀君之誠上以碩圭爲忠大加褒獎碩圭用心之奸詐如此士洪

○御夕講庚申御經筵講訖掌令郭垠獻納李永健啓曰任士洪之輩交結朋黨濁亂朝政罪不可恕請勿給職牒上問左右領事盧士洪對曰士洪只斤玄碩圭耳罪不至於濁亂朝政可給職牒也上謂臺諫曰爾等之言是矣然予非用士洪只給職牒耳何至誤國乎垠等曰昔王安石對神宗言天變不足畏時人以謂人主所畏者天也人君不畏天則何所畏乎今士洪以士兩爲小災不足憂也與王安石何異此小人之尤者也自古人主知小人而不去之而不速以致亂亡者多矣聖上洞知士洪之奸去之不速旋給職牒臣等恐誤國之漸兆於今日侍講官金訢啓曰古云贊御僕從無非正人內乘近侍之任朝廷之重選姜碩卿以賤隸得除是爵及於私昵也且劉從生雖詆一二卿相不干宗社而未蒙恩宥士洪濁亂朝政罪關國家而反還職牒臣恐赦令不信而用法顛倒也上曰姜碩卿其不可爲內乘歟用人但論門地不視心術之邪正固不可也心術若正則豈以門地之賤而不用乎訢曰碩卿之賤則固矣心術之正則亦未之聞也

찬성공사적(贊成公事蹟)과 찬성공신도비명병서(贊成公神道碑銘并序)에 열실된 찬성공 묘소를 되찾은 기록이 전한다.

성종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12일 무자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의정부 우참찬 현석규의 졸기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현석규(玄碩圭)가 졸(卒)하였다. 현석규의 자(字)는 덕장(德璋)인데, 창원인(昌原人)의

대동기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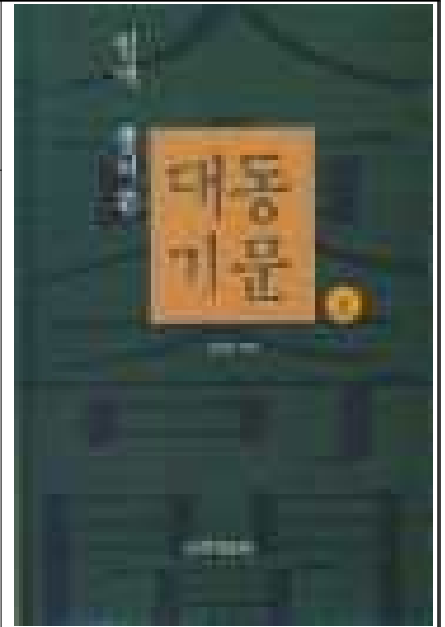
大東奇聞

강효석 (姜勳錫, 1869 ~ 1946) 편저

[도서관 소장정보](#) [종합DB](#) [해제](#) [목차](#)

성종조

- 78 윤필상이 삼림에서 죽다
- 79 손순효가, 그 자리가 아깝다고 말하다
- 80 **현석규에게 효령이 손자의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다**
- 81 양성지의 외제로 규장각에 오른 이가 삼십 여 명이 되다



로 증 의정부 좌참찬(贈議政府左參贊) 현효생(玄孝生)의 아들이다. 경태(景泰) 계유년(545)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처음에는 집경전 직(集慶殿直)에 보임(補任)되었는데, 여러 번 천전(遷轉)되어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이 되었다. 천순(天順) 경진년(546)에 문과(文科)에 차석(次席)으로 뽑혀서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제수받았으며, 개성부 도사(開城府都事), 성균 직장(成均直講), 형조 도관(刑曹都官)·형조 정랑(刑曹正郎), 예조 정랑(禮曹正郎)·중추부 경력(中樞府經歷)·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을 역임하였다. 성화(成化) 임진년(547)에 뛰어올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제수받고, 갑오년(548)에는 뽑혀서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를 제수받았다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승진하였고 얼마 안되어 도승지(都承旨)에 초배(超拜)되었다. 그때 현석규가 일로 인하여 동렬(同列)과 서로 힐난(詰難)하니, 대간(臺諫)이 이를 논박(論駁)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은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이를 구하는 데 힘써서 그 사람에게 맡기면 편하다.' 하였다. 현석규가 형방 승지(刑房承旨)가 되면서부터 사수(死囚)가 체옥(滯獄)되지 않으니, 내가 염려한 것이 없었다. 무릇 사람이 강직(剛直)하면 세상의 꺼리는 바가 된다. 그러나 신하의 도리는 강직한 것을 대의(大義)로 삼아야 한다."

하고, 마침내 여러 승지들을 모두 파출(罷黜)하였는데, 현석규가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굳이 사직(辭職)하려 하니, 특별히 자헌 대부(資憲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초배하였다. 지평(持平) 김언신(金彦辛)이 현석규를 극론(極論)하여 노기(盧杞)와 왕안석(王安石)에게 비교하기에 이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얼굴이 검기는 옷칠한 것과 같지만 마음이 맑기는 물과 같다.'고 하였으니, 용모(容貌)가 비록 추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마침내 김언신을 하옥(下獄)시키고, 또 현석규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는데, 현석규가 상서(上書)하여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정유년(549)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천전되고, 무술년(550)에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어 나갔는데, 고만(考滿)이 되자, 백성들이 대궐에 나아가 1년 동안 유임시켜 주기를 원하니, 임금이 중관(中官) 이효지(李孝智)를 보내어 어의(御衣)를 내려 주고, 손수 글을 써서 포미(褒美)하였다. 그때 중국 조정의 명을 받들어 건주위(建州衛)를 정벌(征伐)하였는데, 현석규는 유진장(留鎭將)이 되었으며, 그 공로(功勞)로 정헌 대부(正憲大夫)로 승계(陞階)되고, 들어와서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이 되었다. 하루는 현석규가 조회(朝會)의 반열(班列)에 있는데, 매우 파리해 보이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기력(氣力)이 매우 피로해 보이니, 조섭(調護)을 잘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휴가를 주고, 중관(中官)을 보내어 선온(宣醢)과 진수(珍羞)를 내려 주었다. 또 어선(御膳)을 거두어 내려 주니, 임금의 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쇠퇴(衰頹)하지 않았다. 졸(卒)하니, 나이가 51세였다. 부음(訃音)을 듣고 임금이 전교하기를,

"현석규가 살림이 빈곤(貧困)하니, 특별히 부의(賻儀)한 예를 써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정갑손(鄭甲孫)의 예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현석규가 비록 어질다고는 하나, 지금 광산군(光山君)551)에게 부의하지 않았는데, 현석규에게 부의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그 집안의 곤궁함을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시호(諡號)는 정경(貞景)이니, 정도(正道)로써 굽히지 않는 것이 정(貞)이고, 뜻을 펴서 행하기를 굳세게 하는 것이 경(景)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현석규는 재주가 있고 사리에 밝으며 총명(聰明)하고 강민(強敏)하여 일을 대하면 능숙하게 처리하므로, 자못 시배(時輩)들의 추앙(推仰)을 받았다. 도승지(都承旨)가 되어 동렬(同列)을 능멸(陵蔑)하니, 동렬들이 모두 미워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틈[嫌隙]이 생겨 끝내 임사홍(任士洪)의 옥사(獄事)를 일으켰다. 일찍이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임금이 환관(宦官) 이효지(李孝智)를 보내어 가서 위로하게 하니, 현석규가 잔치를 매우 풍성하게 베풀었으며, 선물(餽遺)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 현석규가 이효지를 대하여 울면서 주상(主上)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하였으며, 무릇 환관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비록 벼슬은 낮지만 곡진하게 예모(禮貌)를 갖추었다. 일찍이 중국 사신이 되어 가지고 간 반전포(盤纏布)552)를 고의로 모두 쓰지 아니하고, 복명(復命)하는 날 환납(還納)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정상(情狀)을 속여서 명예(名譽)를 구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12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74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註 545]경태(景泰) 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註 546]천순(天順) 경진년 : 1460 세조 6년.

[註 547]성화(成化) 임진년 : 1472 성종 3년.

[註 548]갑오년 : 1474 성종 5년.

[註 549]정유년 : 1477 성종 8년.

[註 550]무술년 : 1478 성종 9년.

[註 551]광산군(光山君) : 김국광(金國光)의 봉호.

[註 552]반전포(盤纏布) : 노자(路資)로 가져 가는 베.

○議政府右參贊玄碩圭卒。碩圭字德璋，昌原人，贈議政府左參贊孝生之子也。景泰癸酉，中進士試，甲戌初補集慶殿直，累遷內膳寺直長。天順庚辰擢文科第二人，拜司憲監察，歷開城府都事、成均直講、刑曹都官・正郎、禮曹正郎、中樞府經歷、議政府舍人。成化壬辰，陞授司憲府執義，甲午，擢拜承政院同副承旨，陞左副承旨，尋超都承旨。時碩圭，因事與同列相詰，臺(圭)[諫]駁之，上曰："人君得人爲難。古云：'勞於求賢，逸於任人。自碩圭爲刑房承旨，死囚無滯，予無慮矣。凡人直，則爲世所忌。然人臣之道，直爲大。'遂盡罷諸承旨，碩圭，不自安固辭，特超資憲司憲府大司憲。持平金彥辛，極論碩圭，至比盧杞、王安石，上曰："古云：'面黑如漆，心清如水。'貌雖醜，何傷?"遂下彥辛于獄，又除碩圭爲刑曹判書，碩圭上書辭職，不許。丁酉，遷知中樞府事。戊戌，出爲平安道觀察使，及考滿，民有詣闕上言，願借一年

者，上遣中官李孝智，賜御衣，手書褒美之。時承朝命，征建州衛，碩圭爲留鎮將，以功陞正憲，入拜議政府右參贊。一日，碩圭在朝班，貌甚癯瘠，上曰：“卿氣力甚憊，其善調護。”仍賜假〔賜暇〕，遣中官賜宣醢、珍羞。又徹御膳以賜之，其恩眷，終始不〔贊〕〔替〕。卒年五十一。訃聞傳曰：“碩圭家貧，其書別賻例以啓。”承政院書鄭甲孫例以啓，傳曰：“碩圭雖賢，今不賻光山，而賻碩圭不可。問其家所乏以啓。”諡貞景：直道不撓，‘貞’；布義行剛，‘景’。

【史臣曰：“碩圭有才辨，聰明強敏，遇事能處，頗爲時輩所推。及爲都承旨，以才氣陵同列，同列皆嫉之。遂成嫌隙，卒致任士洪之獄。嘗爲平安道觀察使，上遣宦官李孝智，往勞之，碩圭設宴甚豐，餽遺無算。對孝智，泣涕言戀主之情，凡待宦官，雖官卑者，曲爲禮貌。嘗奉使上國，所齎盤纏布，故不盡用，復命日，請還納不許，其矯情干譽如此。”】

臣之道直爲大遂盡罷諸承旨碩圭不自安固辭特超資憲司
憲府大司憲持平金彦辛極論碩圭至此盧杞王安石上曰
古云面黑如漆心清如水貌雖醜何傷遂下彦辛于獄又除碩
圭爲刑曹判書碩圭上書辭職不許丁酉遷知中樞府事戊
戌出爲平安道觀察使及考滿民有詣闕上言願借一年者
上遣中官李孝智賜御衣手書褒美之時承朝命征建州衛碩
圭爲留鎮將以功陞正憲入拜議政府右參贊一日碩圭在朝
班貌甚癯瘠上曰卿氣力甚憊其善調護仍賜假遣中官賜
宣醢珍羞又徹御膳以賜之其恩眷終始不替卒年五十一訃
聞傳曰碩圭家貧其書別賻例以啓承政院書鄭甲孫例以
啓傳曰碩圭雖賢今不賻光山而賻碩圭不可問其家所乏
以啓諡貞景直道不撓貞布義行剛景史臣曰碩圭有才辨聰
明強敏遇事能處頗爲時輩所推及爲都承旨以才氣陵同列
遂成嫌隙卒致任士洪之獄嘗爲平安道觀察使對孝智泣涕
言戀主之情凡待宦官雖官卑者曲爲禮貌嘗奉使上國所齎
盤纏布故不盡用復命日請還納不許其矯情干譽如此

子司憲府掌令李仁錫來啓曰金仲孫賂僧信有請于洪應爲
成川教授應雖曰因金師禹之薦而取才除授無薄可考今雖
經赦不治豈可居三公之位且柳子光任士洪交結朋黨罪開
社稷不宜蒙赦傳曰人君不可失信既肆赦而又選配所則
是二命也金仲孫推案予將考之正言尹碩輔亦來啓曰士洪
子光罪關社稷不可赦也不允先是洪應爲吏曹判書時處
山鄉吏金仲孫濫授成川教授至是事覺被鞫而蒙宥故仁錫
啓之○議政府右參贊玄碩圭字德璋昌原人贈議政
府左參贊孝生之子也景泰癸酉中進士試甲戌初補集慶殿
直累遷內膳寺直長天順庚辰擢文科第二人拜司憲監察歷
開城府都事成均直講刑曹都官正郎禮曹正郎中樞府經歷
議政府舍人成化壬辰陞授司憲府執義甲午擢拜承政院同
副承旨陞左副承旨尋超都承旨時碩圭因事與同列相詰臺
主駁之上曰人君得人爲難古云勞於求賢逸於任人自碩
圭爲刑房承旨死囚無滯予無慮矣凡人直則爲世所忌然人

(전략) 슬프다 公의 무덤이 있는 곳을 잃어 버린지 백여년(百餘年)이 되었다. 고종황제(高宗皇帝) 29년(西紀1892년)임진(壬辰) 가을에 公의 십오대손(十五代孫) 참장(參將)(대한제국(大韓帝國) 때 무관(武官))벼슬에 있는 영운(暎運)이 황제(皇帝)의 명(命)을 받들어 영남(嶺南) 여러 군(郡)을 시찰(視察)하였는데 일을 마치고 公의 묘소(墓所)를 찾고자 밀양읍지(密陽邑誌)를 고찰(考察)하여 보니 읍지(邑誌)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것과 사표좌향(四標坐向)에 자상(仔詳)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서로 부합(附合)되므로 황폐(荒廢)한 무덤을 찾고자 범장(犯葬)(남의 산소(山所)의 경계를 침범하여 묘소를 쓴 것)한 무덤을 법(法)에 의(依)하여 파내어 찾아냈으니 자손(子孫)으로서의 성의(誠意)를 다한 것이며 임금이 베푸는 은혜(恩惠)가 망극한 것이 아닌가.

국내(國內)에 있는 훌륭한 선비들이 처음에는 公에게 혜택(惠澤)이 없었던 것을 민망(憫忙)히 여겼다. 을사추(乙巳秋)에 예원(禮院)에 아뢰니 예원(禮院)이 직접(直接) 연감(淵鑑)에 상신(上申)하였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건대 국가(國家)가 다사다난(多事多難)해서 품의(稟議)하고 재가(裁可)할 여가(餘暇)가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라 하겠다. 公의 사손(嗣孫) 종이품(從二品) 내장원경(內藏院卿)을 지내고 창원부감리(昌原府監理)로 있는 학표(學杓)가 公의 충효(忠孝)에 대(對)한 것을 비(碑)에 새겨 세우고 후손(後孫)에게 전(傳)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승(家乘)과 국사야승(國史野乘)에 기록(記錄)된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며 비문(碑文)을 지어 달라고 간곡(懇曲)히 부탁(付託)하여 왔으므로 글이 비록 부족(不足)하지만 公의 위대(偉大)한 업적(業績)과 뛰어난 지조(志操)와 절개(節介)를 여기에 소개(紹介)하려는 바이다. (후략)

고종황제즉위(高宗皇帝卽位)43년(西紀1907년)7월

외후손(外後孫) 내부대신(內部大臣)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 근찬(謹撰)

* 사손(嗣孫) : 가계(家系)를 계승할 자손. 조선시대의 가계 계승은 실질적으로는 제사 상속과 신분 상속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가계의 계승을 뜻하는 승가(承家)·계후(繼後)·계사(繼嗣)와 제사의 상속을 뜻하는 승조(承祧)·봉사(奉祀) 등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가계의 계승은 원칙적으로 적처의 장자인 적장자(嫡長子)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계를 단절할 수는 없으므로 첩의 아들인 서자(庶子)로 하여금 가계를 계승시키거나(承嫡), 서자가 있어도 남계 근친 중에서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시키기도 하고(立後), 혹은 3세 이전의 유기된 아이를 수양(收養)하여 가계를 계승시키기도 하였다. 그 어느 경우라도 가계를 계승하는 자손을 사손(嗣孫이라고 한다. 사손(嗣孫)은 흔히 혈연을 이어갈 자손을 뜻하는 혈손(血孫)과 대비되어 쓰인다. 즉, 혈손은 생물학적 자손을 뜻하는 데 반하여 사손은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적인 자손이라 하겠다

1892년(고종29년, 임진壬辰) 가을에 대한제국 원수부총장을 역임하신 24세 暎運(영운)公이 근 400년간 失傳(실전) 되었던 9세 贊成公(찬성공) 碩圭(석규)公 부부(夫婦)의 멸실(滅失)된 墳墓(분묘)를 찾은 後(후) 선산을 점유하고 있던 벽진이씨(碧珍李氏) 집안으로부터 선산을 매입하고 墳墓(분묘)를 整備(정비)했다. 贊成公(찬성공)系(계) 後孫(후손)들과의 緣通(연통)이 되지않자 暎運(영운)公의 만형 경운(擎運, 소설가 현진건의 부친)公이 주도하여 매년 伐草(벌초), 歲祀(세사) 等(등)을 지내왔으며, 후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1982년에 재실(齋室) 청단재(靑端齋)를 건립하는 등 최근까지 130여년을 奉祀(봉사)해왔다.

1924년 甲子譜(갑자보, 5수보) 編修(편수)時(시) 중랑장공파 14세 장례원판결사(贈掌隸院判決事) 수겸(壽謙)公의 4남인 15세(세) 虎(호)公을 형제들과 분리하여 찬성공의 神主養子(신주양자)로 入籍(입적)하면서 15세 호(虎)公의 아들 16세 철상(哲祥)公의 차남 17세 한일(漢一)公 후손들을 찬성공(贊成公) 후손들과 함께 고려시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내신 6세 태로(台老)公을 중시조로 하는 태로파(太老派)의 경성(京城) 지역 계보로 족보에 등재하고 1982년 임술보(壬戌譜, 7수보)까지 계보를 이어왔다.

寅

2000년 경진보(庚辰譜, 8수보) 編修(편수)時(시) 호(虎)公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9세(세) 贊成公(찬성공) 碩圭(석규)公(공)을 中始祖(중시조)로 하는 贊成公派(찬성공파)를 만들어 호(虎)公 후손 전체를 贊成公파(찬성공파)로 등재했다.

2016년 전자족보(電子族譜) 9修譜(수보) 編修(편수)時(시) 15세 호(虎)公의 후손들은 15세 호(虎)公을 중시조로 하는 중랑장부사직공파(中郎將副司直公派)로 獨立系派(독립계파)를 構成(구성)해서 贊成公派(찬성공파) 系譜(계보)에서 分離(분리)되었다.



개축된 찬성공 석규 부부 묘소

33. 贊成公事蹟

國朝人物誌云玄碩圭字德璋延州人護軍孝生子也聰慧奇偉西遊京師 世宗路見奇其狀貌召見于孝寧大君補第問其年對曰十七歲問其娶對曰未婚問以經史子集應對如流謂大君曰此兒必大起門戶雖出寒微將相豈有種乎願兄畜以爲婿大君以其子瑞原君之第二女妻之世祖庚辰登文科性清介遇事敢言 成宗朝以其言行皆當於義不次超擢官至右贊成

國朝寶鑑云 成宗丙申七年都承旨柳輕以七年居職辭免 上謂知經筵事洪應曰刑房承旨玄碩圭言行皆當於義且使獄訟無冤滯今當右賢欲超授都承旨於古有例否對曰 世宗朝安崇善 世祖朝盧思慎皆以賢能超擢都承旨也 上乃以碩圭代輕爲都承旨持平金彥辛劾玄碩圭比之於盧杞王安石 上曰當遍問議政銓曹若無其實爾受欺君之罪否對曰臣當受極刑上乃召議政銓曹問之皆對曰臣不知其爲小人也於是 上下旨義禁府鞠彥辛禁府讞以欺妄律杖一百徒三年 上曰罪當死也何律之輕遂命押彥辛至政院鞠之中樞府事金紐上疏曰臺諫人主之耳目也言及乘輿至尊改容事關廊廟宰相待罪今碩圭之爲君子爲小人臣未知之使碩圭君子也而彥辛指爲小人亦不過錯料誤執况碩圭不次超擢位列六卿可謂赫赫大臣彥辛微者披肝露膽敢爭於雷霆之下言雖不中有古骨鯁之風誠宜褒獎以勸士類而反抵於罪臣恐自此臺諫解體也 上曰彥辛自言身被極刑予當裁斷卿其退去仍命中官問彥辛曰汝今當死能知當初所執之誤耶對曰臣初不畏死亦不知所執之誤也於是 上教曰臨死不易辭信也卽命解枷就職無何諸諫官上疏匡救鞠諫官之過 上下教嘉矣○任士洪有罪削竄初士洪當上初年請罷內佛堂頗有聲稱 上亦嚮用然士洪外若嚴重內實陰邪好以機數傾陷人嘗嗾諫官劾去玄碩圭規取都承旨又構誣南孝溫朱溪副正沈源之罪將欲網打士類以媚悅於勳舊公議諸憤至是副提學俞鎮奉教表沿沫等上疏言都承旨任士洪陰隱邪佞凡古小人之態皆兼以有之其父元濬穢行惡跡著自 先朝請竄士洪父子以答天譴 上召兩館臺閣問之大司憲柳輕言誠如館疏所訴也 上卽命收士洪告身元濬不可以子罪及其父勿問應教蔡壽等諫曰臣等義不可與元濬同回旋於經筵乞罷臣等之職 上允之朱溪副正沈源奏曰

殿下之并罪兩館及士洪父子何哉士洪卽臣之姑母夫詳知其小人也
因歷數言奸邪狀 上復召沿洙等及士洪父子問其狀沿洙因面斥士
洪嗾諫官劾碩圭事士洪語屈不能辨 上乃教曰其復兩館人之職遂
命竄士洪○己亥十年二月平安道觀察使玄碩圭有治績 上以御書
褒之仍賜御衣法醢密陽邑誌云玄碩圭登第官至議政府右贊成(出
勝覽) 成宗大王朝恩寵殊隆柳子光與任士洪朴孝元等欲擠去子光
等謀敗反流東萊(出子光傳) 居府北大項里谷良洞(勝覽云谷陽村
部曲) 北有右贊成玄碩圭墓子坐原○孝寧大君第二子瑞原君案五
子五女第二女玄碩圭文科贊成諡夷安父護軍孝生(在璿源譜略)
又 贈諡文憲(在文衡錄)

찬성공신도비명병서(贊成公神道碑銘并序) 원문

34. 贊成公神道碑銘并序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吏曹判書弘文館大提學原任奎章閣直提學
贈諡文憲號清湍玄公碩圭延州人也公之鼻祖諱覃胤以高麗毅宗朝
元勳官至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諡景憲實左海玄氏發源
之始也景憲公舉三男長諱德秀以功封星山府院君官兵部尚書次諱
利厚以功封廣城君官按廉使次諱德裕官金紫光祿大夫大司空西京

留守封檜原君諡正獻正獻生諱昇官吏部典書昇生諱璟以牧使官至閤門祗候璟生諱簡官安南都護府使常衣司徒簡生諱台老忠肅王朝登文科官至門下侍郎平章事台老生諱元義官樞密院直學禮曹典書元義生諱孝生始仕本朝官至少尹配貞夫人丹陽李氏叅議第之女也以 世宗辛酉二月十七日生公公幼而慧悟長益博學魁偉特達之志氣兼備廉公正直之行義俱著自在齠齔時爲衆所敬服

世祖朝庚辰登第歷敎清顯屢遷至舍人考諸國朝寶鑑槩可見其詳矣其在 成宗丙申都承旨柳輕以七年居職辭免 上謂知經筵事洪應曰刑房承旨玄碩主言行皆當於義且使獄訟無冤滯今當右賢超授都承旨於古有例否應以 世宗朝安崇善 世祖朝盧思慎對之竟超授都承旨後歷大司成兵吏曹判書又拜叅贊贊成越三年己亥公以平安道觀察使大著聲績至有登聞於 朝而御衣冚醢與御書并下光輝朗耀特降褒異之恩是公當日際遇之盛無不由於躬行心得其修齊治平之大要使斯君爲堯舜之君而使斯民被堯舜之澤者也至若媚嫉賢能之如柳子光任士洪輩以公位望隆赫一則嗾諫官劾奏一則設權謀擠去而因奉教表公沿沫之疏彈面斥俱伏蔽賢之科而并用竄逐之典是公忠信質直屹然若砥柱撐立百道狂瀾有不能傾陷者也而運之攸否智焉而所不免也賢焉而所不免也逮夫戊午士禍之網打清流也公執義正大坐流嶺表之密陽郡以終餘年壬戌十月五日公損館之日也噫公之生其眞降自喬嶽遭遇聖明章章焉有功業之可稱則公之沒其必上爲列星播傳聲牙炳炳焉節義之可尚而兵燹屢經文獻爽實掌銓衡二十年名顯之蹟僅存一二於國乘邑誌者豈不惜哉郡之下西面谷良里內洞子坐原是公禮葬之也公之沒自 上特憐其苦心秉直遣地方官致祭仍又 賜牌而樹封之公之存沒間知遇也禮遇也何其盛矣配貞敬夫人全州李氏瑞原君案第二女孝寧大君補孫女也以 世宗壬戌九月十五日生卒於 中宗癸酉三月十一日與公同原異兆而葬之

公舉二男一女男長俊 成宗朝文科官司諫次健系士元后官沔川郡
 守女適廣州李世匡文承旨俊長子思肅蔭縣監次思傑次思弼官忠順
 侍衛次思佑蔭沔川郡守思肅子瑾通德郎女適都正完山李壽甲思傑
 子琢思弼子珽蔭叅奉職琳琦巡察使璉文科正言璦珉固城縣令璞思
 佑子仁居義居瑾長子守諫蔭府使次守儉蔭叅奉女適廣州李之蕃守
 諫子虎蔭副司直茲以降雲仍寔蕃簪組相承達官名碩之爲世所推者
 亦多有之始知公英毅不昧之令留有餘不盡之福以還子孫也明矣噫
 公塋域之不幸失傳迄爲數百歲而 上皇三十九年壬寅秋公之十五
 代孫叅將暎運奉命視察於嶺南諸郡事既訖取考密陽邑誌所載及四
 標坐向之昭詳符合者墓荒埋沒之兆尋驗而改築之前後犯葬之塚照
 法而掘去之實名祖肖孫之誠意所格而抑其非 聖恩攸暨耶國內士
 林之聳動觀瞻者尤以公不祧 恩典之獨後於戊午諸賢舉懷咨鬱乙
 巳秋呈籲禮院仰請奏明于 淵鑑之下而竟因國家多事未克稟裁其
 或期數有待而然歟公之嗣孫從二品內藏院卿昌原府監理學杓素著
 忠孝今欲豎碑墓道銘而勅之壽其傳於來裔袖其家乘與國史野乘之
 所略者來示不佞懇之以一言以余不文雖不足萬一揄揚然若公之勳
 業昭著志節卓犖有不泯於公議藉蔚茲庸撫其槩而系之以銘銘曰
 昭代方興爰有哲人緬惟我公早擢臣隣阜陶平允賈誼超遷睠彼西土
 惠洽生民金縷玉液 恩數頻繁宵小喧虺在公無損陽九遭剝蕙歎芝
 焚玦淚南荒悠悠白雲旣賄且隨禮云自天碩果懷仁慶延後昆載新瞻
 掃理無終湮有碑斯豐屹于山巔以永來世於乎不顯

上之卽阼四十三年丙午七月 日

外裔 內部大臣宮內府特進官 海平 尹用求 謹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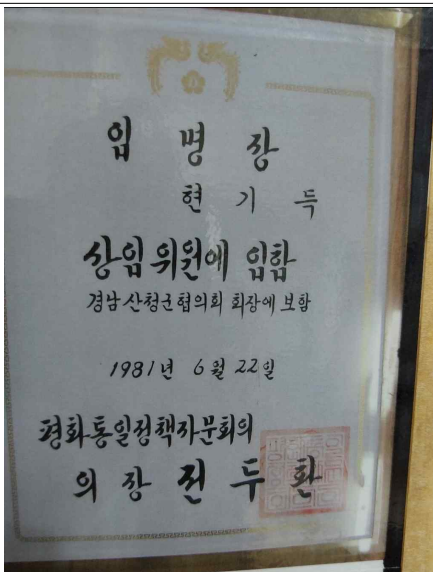
참고문헌

『예종실록(睿宗實錄)』/『성종실록(成宗實錄)』/『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국조방목(國朝榜目)』
 『대동기문(大東奇聞)』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1 完碩 완석	1 遠世 원세	1 龍洛 용락	1 益秀 익수	1 炳仁 병인	1 在明 재명	1 鎭原 진원	1 永旭 영옥	2 復東 복동	1 光日 광일	2 殷基 은기	1 鍾學 종학	1 仁洙 인수	1 在元 재원	1 鎭煥 진환		
2 泰時 태시	1 得立 득립	1 崙 륜	1 守齡 수령	3 應禮 응례	2 以元 이원	1 昌胤 창운	1 遇周 우주	2 興秀 흥수	2 德來 덕래	1 時憲 시헌	2 應龜 응구	3 尙海 상해	1 桂淑 계숙	1 仁碩 인석	1 外宅 외택	1 正珉 정민
1 培根 배근	1 鍾律 종률	1 海朝 해조	1 相佑 상우	1 炳泰 병태	2 載昌 재창	1 鎭宗 진종	2 柄元 병원	1 桂尙 계상	2 再榮 재영	2 泳必 영필	1 相順 상순	2 基涉 기섭	2 柄壽 병수			
1 洪奎 홍규	1 銖云 수운	1 正澤 정택	1 根必 근필	1 貞炯 정형	1 成淑 성숙	1 理三 이삼	1 光載 광재	1 殷瑞 은서	1 春玉 춘옥	4 起攝 기섭	1 鍾一 종일	2 世洙 세수	2 相春 상춘	3 文煥 문환	5 在松 재송	1 法鎔 법용
1 允馨 윤형	1 彦良 연량	1 進昌 진창	1 就萬 취만	2 光夏 광하	1 尙一 상일	1 鎭參 진삼	2 永昌 영창	1 學東 학동	2 淸顯 청현	4 完基 완기	1 鍾秀 종수	1 養浩 양호	1 桂淑 계숙			
					2 尙珪 상규	1 鎭達 진달	3 永浩 영호	1 國東 국동	1 龍顯 용현	1 得基 득기	3 利成 이성	1 敬哲 경철	1 財定 재정			
1 永祿 영록	2 斗雲 두운	1 好信 호신	2 俊昌 준창	1 尙彦 상언	1 思振 사진	1 命甲 명갑	1 謹植 근식	1 炳圭 병규	1 甲基 갑기	2 鍾烈 종렬	2 洛洙 낙수	1 相德 상덕	1 知煥 지환			
			3 臣昌 신창	1 尙彝 상이	1 思殷 사은	1 文甲 문갑	3 晚植 만식	1 炳勳 병훈	1 一鳳 일봉	1 鍾淳 종순	1 龍洙 용수	1 相雄 상웅	1 承煥 승환			
1 仲逸 중일	3 大會 대회	1 珪 규	1 道彬 도빈	1 一字 일우	1 春蕃 춘번	4 龜煥 구환	1 培植 배식	1 炳元 병원	1 奎東 규동	2 鍾錫 종석	1 駿吉 준길	1 鎬雄 호웅	1 宙泳 주영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재원 在元, 28세, 자 병문(炳文), 1960년경자(庚子)생, 현진영농조합대표이사, 대종회 부회장

기섭 基涉, 27세, 자 기득(基得), 호 형산(荊山), 1924년갑자甲子생, 초대면의회부위원장 당선, 면장(面長) 18년, 산청군문화원장(山淸郡文化院長), 대통령선거인단 당선, 민주평통상임위원, 산청군협의회장(서기대우)(山淸郡協議會長)(書記待遇), 근정포장수상, 국민포장수상



병수 柄壽, 28세, 자 재수(載秀), 1950년경인庚寅생, 진주전화국 총무과장, 내무부장관 표창, 체신부장관 표창, 한국전기통신공사 표창, 자영업(진주목욕탕), 대중회 이사

재송 在松, 30세, 1955년을미(乙未)생, 법무부교도관(法務部矯導官)교감(矯監), 법무부장관 표창(교정행정발전), 옥조근정훈장(2005년)

종수 鍾秀, 26세, 1939년기묘(己卯)생, 지방행정사무관, 괴산군감물면장(槐山郡甘勿面長), 대통령훈장및표창, 괴산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이성 利成, 26세, 자 종리(鍾利), 1941년신사(辛巳)생, 건설업, (사)생태계보존협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관수 鶴洙, 26세, 1935년생, 찬성공 막금종친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상덕 相德, 27세, 1954년갑오(甲午)생, 동대문시장의류업, 막금종친회회장, 대종회 부회장

용수 龍洙, 26세, 1922년임술(壬戌)생, 농협상무이사, 농협중앙회경기지부참사, 평택군농업협동조합상무이사, 농협평택지점장, 평택막금종친회장, 대종회 고문

상웅 相雄, 27세, 1942년임오(壬午)생, L A유니티은행이사회회장, L A마리넥스회사 대표이사

승환 承煥, 28세, 1966년병오(丙午)생, L A마리넥스회사 부사장

준길 駿吉, 26세, 교육자, 1924년갑자(甲子)생, 서울대학교사범대학졸업, 교육계45년근속, 국민훈장동백장

호웅 鎬雄, 27세, 1952년임진(壬辰)생, 대웅교역대표이사, 수출산업공로대통령포상

석두 錫斗, 26세, 1952년생, 대종회사무국장, 대종회 지도위원

천수 千洙, 26세, 1950년생, 평택막금종친회장, 대종회 부회장

채문 采門, 26세, 1949년생, 화성물산 대표, 대종회 부회장

경수 鯨洙, 25세, 1950년생, 평택막금종친회 감사, 대종회 이사

종상 鍾祥, 25세, 1968년생, 대종회 이사

중재 重在, 26세, 1941년생, 대종회 이사

응수 應洙, 26세, 1946년생, 대종회 이사

종민 鍾旼, 26세, 1946년생, 군포수리고 교장, 대종회 이사

종서 鍾書, 26세, 1948년생, 감리교 목회자, 대종회 이사

진택 鎭澤, 27세, 1941년생, 초평읍장, 대종회 이사

무웅 武雄, 27세, 1942년생, 흥성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낙원 樂源, 27세, 1945년생, 대종회 이사

상권 相權, 27세, 1958년생, 대종회 이사

상규 相圭, 27세, 1959년생, 오약국 대표약사, 대종회 이사

경철 敬哲, 27세, 1971년생, 대종회 이사

무용 茂鎔, 31세, 1948년생, 대종회 이사

경용 景鎔, 31세, 1950년생, 김천종친회장, 대종회 이사